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111-0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사전 컨설팅감사 ·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집

적극행정, 국민행복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111-01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사전 컨설팅감사 ·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집

적극행정, 국민행복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격려사 1

우리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종종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을 꾸짖는 대명사지만, 그 이면에는 공무원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스며있습니다.

많은 일선의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관행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유희를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다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고 나서, 안심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과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빚장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태도 바뀌며 정부혁신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에서 그동안의 이런 사례들을 묶어 발간하게 된 본 책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따뜻한 영혼이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발간사 |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감사를 주관 하는 부처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도와 주는 감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 유용한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 제도입니다.

일선 대민 접점의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들로서, 지방분권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감사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중 사전 컨설팅감사는, 2014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제도를 우리부가 제도화하여 2016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하였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원이 제정하여 우리부가 2009년 도입한 이후 공무원이 감사걱정 없이 소신껏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 정말 도움이 되었다” 는 내용의 감사 편지를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규제로 인해 막혀있던 곳을 감사를 통해 뚫어주었다는 보람에 가슴이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합동감사 현장에서는 여러 중앙부처의 공동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하여 기관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단체·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제도 활성화와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7년 말에는 전국의 사전 컨설팅감사 누계실적이 2,292건에 달했고,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도입 이후 1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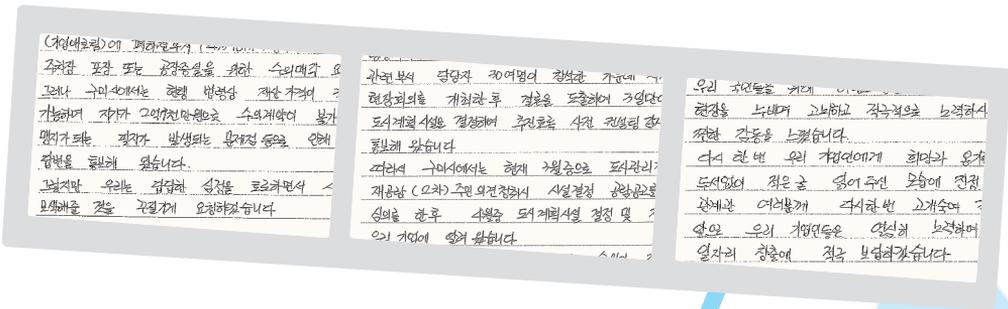
그 중 우수한 사례를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이런 좋은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뜻으로 노력해 주신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감사부서 동료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활동 측면에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업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감사관
김종영



목 차

01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및 현황 / 01

02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 07

- 01 접경지역의 농업진흥지역구역에 비상대피 시설 설치(행안부, '16년) / 08
- 02 참기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깻묵의 폐기물 해당 여부(행안부, '16년) / 10
- 03 먹는물 관리법 위반 행정처분(환경부, '16년) / 12
- 04 민간투자사업(아쿠아리움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행안부, '16년) / 14
- 05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신청 거부에 따른 기업 애로(행안부, '16년) / 16
- 06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변경(행안부, '16년) / 18
- 07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재료비 공제 대상으로 반영(행안부, '16년) / 20
- 08 자치단체 보조금 교부사업의 신축 건축물 처분 협의(행안부, '16년) / 22
- 09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사업 재산(건물) 처분(행안부, '16년) / 24
-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복지부, '16년) / 26
- 11 「책임읍면동제」 시범운영 관련 행복e음의 사용자 권한 부여(행안부, '16년) / 28
- 12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기부심사 절차 간소화 가능 여부(행안부, '16년) / 30
- 13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준공처리(부산, '17년) / 32
- 14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1인)의 대표자 퇴직 적립금(부산, '17년) / 34
- 15 공유재산 대부계약체결 시 대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부산, '16년) / 36
- 16 공원 경관유지를 위한 양수장 가동 경비 지원(대구, '17년) / 38
- 17 국가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대구, '17년) / 40
- 18 강관압입구간 발파암 발견에 따른 계약단가 변경(대구, '17년) / 42

- 19 제설 자재 수의계약(대구, '17년) / 44
- 2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분점 인정(대구, '17년) / 46
- 21 암모니아 파이프 라인 설치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인천, '17년) / 48
- 22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인천, '17년) / 50
- 23 경관녹지 해제를 통한 공장 유치(인천, '17년) / 52
- 24 도로사선제한 적용 폐지(인천, '17년) / 54
- 25 △△국제도시 내 오수관로 불명수 유입개선(인천, '17년) / 56
- 26 도서 구입 시 입찰자격에 대한 기준(인천, '17년) / 58
- 27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확보(광주, '16년) / 60
- 28 경사도를 초과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대전, '17년) / 62
- 29 지구단위계획구역 위험물저장처리 시설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가능 여부(대전, '17년) / 64
- 30 산업시설용지 분할 협의 신청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울산, '17년) / 66
- 31 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통합 설계 가능 여부(울산, '17년) / 68
- 32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 대행 등 용역의 업무 범위 대립(울산, '17년) / 70
- 33 지적 재조사 사업조정금 분할납부 연장으로 부담 경감(세종, '17년) / 72
- 3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감가상각비 정산(세종, '17년) / 74
- 35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반려처분 민원해소(세종, '17년) / 76
- 36 용도지역 변경으로 공장 증·개축 가능(경기, '15년) / 78
- 37 건축물대장 현황도 정정으로 집단민원 해결(경기, '16년) / 80
- 38 법원조정 분할 토지에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공장증축(경기, '16년) / 82
- 39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허가의 합리적 적용(경기, '16년) / 84
- 40 산악 로프웨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강원, '17년) / 86

목 차

- 41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명확화로 행정절차 통일(강원, '17년) / 88
- 42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발행위 허가 사후 추인(강원, '17년) / 90
- 43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기준 산정(충북, '17년) / 92
- 44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가능여부(충남, '17년) / 94
- 45 하수관로 정비사업 통합 감리용역 가능여부(충남, '17년) / 96
- 46 기부채납 된 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 지급 가능여부(충남, '17년) / 98
- 47 신도시 주변지역 축사 이전 · 폐업 보상방안(충남, '17년) / 100
- 48 규격확인이 곤란한 물품검수에 대한 기업부담 경감(전북, '17년) / 102
- 49 출산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전북, '17년) / 104
- 50 보조사업자 승계 보조시설물의 공익적 손실 예방(전북, '17년) / 106
- 51 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해석(전남, '16년) / 108
- 52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관련 도로 인정 여부(전남, '17년) / 110
- 53 도시지역 내 도로 인정 여부(전남, '17년) / 112
- 54 공장 지적 확정 측량 관련(전남, '15년) / 114
- 55 양식장 신축 산지전용허가 관련(전남, '17년) / 116
- 56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적용(전남, '17년) / 118
- 57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전남, '17년) / 120
- 58 도서 지역 상수도 공사 수의계약 가능여부(전남, '16년) / 123
- 59 군 계획시설(풍력발전시설)의 경미한 변경 여부(경북, '16년) / 126
- 60 도로 부지내 구조물(옹벽) 설치 가능 여부(경북, '17년) / 128
- 61 허가받은 건축물에 따른 농지전용 신청(행정착오 정정)(경북, '16년) / 130
- 62 양돈농장 폐업보상금 지급 요구에 따른 행정절차 적정 여부(경북, '17년) / 132

63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애로(경남, '17년) / 134

64 재난 및 천재지변 발생 시 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원(경남, '17년) / 136

65 비료생산업 등록(축산분뇨 처리업) 시 관계법령 저촉 여부(경남, '17년) / 139

66 어항 조성공사 발주(제주, '17년) / 141

03 적극행정 면책 개요 및 현황 / 143

04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 149

01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관리 등 부적정(행안부, '18년) / 150

02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민간위탁 업무처리 부적정(부산, '16년) / 152

03 건설공사 발주 및 자재구매 등 부적정(부산, '17년) /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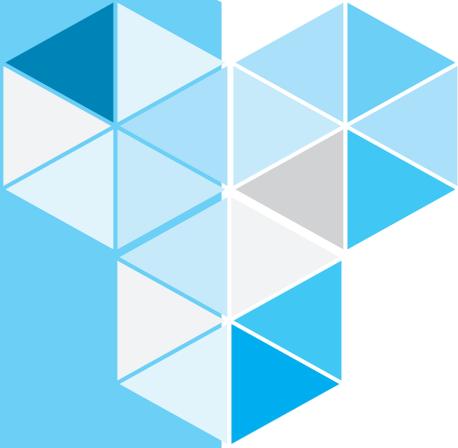
04 보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분리 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대구, '16년) / 156

05 하수도 공사 일부 미 시공 및 감독업무 소홀(광주, '16년) / 158

0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및 배출인계서 작성 부적정(세종, '16년) / 160

07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용역 등 관리·감독 소홀(강원, '16년) / 162

05 관련 법령 및 규정 / 165





01

사전 컨설팅감사
개요 및 현황



개요

추진배경

-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복잡한 사안이나, 규정이 불확실 할 경우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감사근거 및 대상사무

- (감사근거) 국무총리 훈령, 각 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에 근거
 - (중앙부처) 「지자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지자체) 각 시·도별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
- (대상사무)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쉽게 알기 어려운 다음의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신청절차

① 시·도 사무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할 경우 컨설팅기관의 감사 면제가능

※ 시·도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② 시·군·구 사무



*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할 경우 컨설팅기관의 감사 면제가능

※ 시·도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

컨설팅 결과 조치

- 신청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등) 및 합동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처리방안 제시
- 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 추진
-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 각 시·도 또는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 감사 면제 가능

추진 경과 및 실적



추진경과

- 경기도에서 최초로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및 실시('14. 4월)
- 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계획 수립('15. 1월)
- 사전 컨설팅감사 시행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15. 4월)
- 국무총리실 주관 소극행태 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15. 12월~'16. 1월)
-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 시 활성화 방안 발표('16. 2. 23.)
-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16. 2월)
-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16. 4월)
-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17. 12월)

* 최우수상(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우수상(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인천광역시·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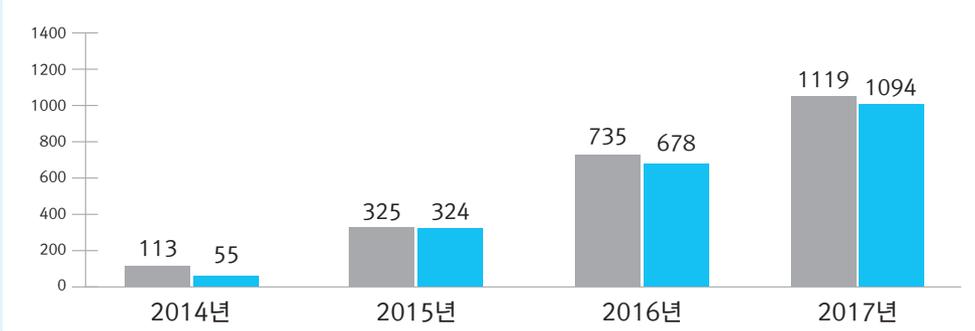
추진실적(2017. 12. 31. 기준)

총괄

- (접수/처리건수) 2,292건 / 2,151건(인용·대안제시 1,670, 미인용·기각 481)
- (처리기관) 24개 기관(중앙 7, 지방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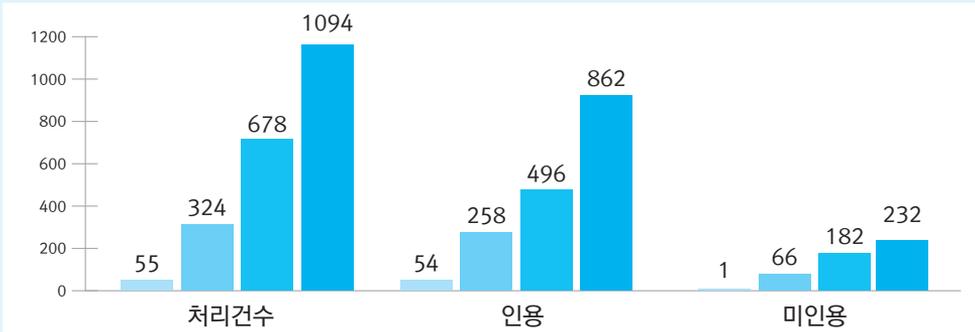
세부내용

연도별 처리 현황 ■ 접수건수 ■ 처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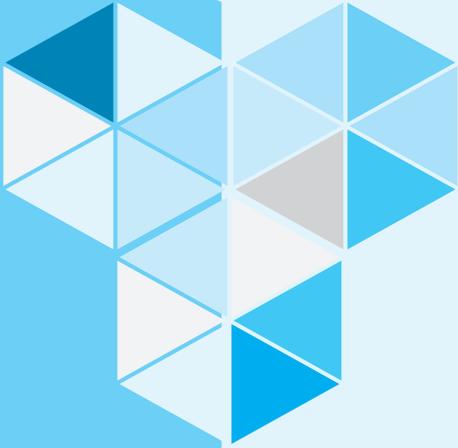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4-2017 증감	
						증감	%
접수건수	2,292건	113건	325건	735건	1,119건	증 1,006건	890
처리건수	2,151건	55건	324건	678건	1,094건	증 1,039건	1,889

유형별 처리 현황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처리건수	2,151건	55건	324건	678건	1,094건
인용	1,670건	54건	258건	496건	862건
미인용	481건	1건	66건	182건	232건



02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컨설팅 요청 내용

접경지역 마을에 북한의 공습과 폭격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필요해 해당 지역은 (구)국민안전처로부터 '16년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소관 지자체의 농업·건축 부서에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비상대피 시설을 주 용도로 하는 건축물(공작물 포함)은 농업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지역에서도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법 제시를 구하는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쟁점 사항

-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비상대피 시설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를 강행할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농지법」 제32조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다.
- 또한 위법을 피하기 위해, 농지가 아닌 일반대지를 매입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6천 4백만원 → 1억 6천만원 정도)될 것이 예상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농업지역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창고, 작업장, 일반목욕장, 구판장, 마을공동취수장, 운동시설, 마을회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사업추진을 주관하는 (구)국민안전처의 「2016년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지침」에 따르면, 비상대피시설은 평시에는 교육시설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주민사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시설은 실제 평상시에 마을주민인 농업인을 위해 활용되는 체육시설 등의 시설로 농지법 및 건축법에 맞게 등록하여 운영하고, 설치하는 비상대피 시설 기준에 맞게 추진하도록 신청기관에 통보 하였다.
-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고, 대체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추가소요를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참기름 생산업체에서 생산과정 중 발생한 식물성 잔재물인 깻묵은 수거·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부패·변질에 따른 악취, 해충 등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어,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하여 처리하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 사료공장에 깻묵을 직접 판매 하던 것을 지도점검 이후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해당 사업자는 시청에 규제 애로 건의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조, 제13조의2 등, 「사료관리법」 제2조, 제8조, 제11조

쟁점 사항

-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4에는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소관 자치단체의 행정지도는 이러한 해석을 따른 것이다.
- 반면, 위 업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고, 깻묵을 이용한

단미사료¹⁾를 생산·유통하고 있는데, 이 경우 깻묵이 폐기물로 분류되는지,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위 견을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깻묵이 발생단계부터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로 지정하여 관리(생산·유통·사용 등)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농림부로부터는 “「사료관리법」제 8조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생산한 참깨박(참깨에서 기름을 짜고 남는 부산물)은 사료에 해당되며, 생산한 사료는 직접 판매 또는 사료공장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두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면, 깻묵의 발생단계부터 「사료관리법」에 따라 생산·관리·유통되는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위 업체의 경우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관할청에 사료제조업등록을 하였고, 위 업체의 사료성분등록증(道 발행) 및 사료검정증명서(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연구소 발행) 등 관련 증빙자료에 따르면 ‘깻묵의 발생단계부터 「사료관리법」에 따라 생산·관리·유통’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소관 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해당 관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정정하여,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보장하였다.

1)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2.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컨설팅 요청 내용

환경부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 합동점검 중 제조업체가 자기품질검사를 위한 검사 장비 중 '진탕수욕조'를 구비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여, 해당업체를 제조업 시설 기준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해당 업체는 '진탕수욕조'는 현행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에서 사용되지 않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제조업 시설기준'에 불합리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해당 장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시설기준'과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의 소요장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와 행정처분 시 기업활동 저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 컨설팅검사를 신청하였다.

📖 관련 법령

- 「먹는물 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쟁점 사항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먹는물 제조업 시설기준'에는 '진탕수욕조'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조업이 구비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 사업자와 신청기관은, 해당 장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시설기준'과 「먹는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의 소요장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필요하지 않는 장비라는 입장이다.

- 따라서 먹는물 관리법령의 해당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와, 해당 법령 위반에 따라 요청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진탕수육조’는 「먹는물 공정 시험기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자가 품질검사 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서, 「먹는물 관리법」의 최초 입법당시(95. 5. 1)부터 불필요한 장비가 시설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입법 오류로 판단된다.
- 또한, 현행 ‘먹는 샘물 제조업 시설기준’에 ‘진탕수육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나, ‘진탕수육조’는 최초 입법 당시부터 불필요한 장비를 시설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후 시설기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점검일 현재까지 유지해 오며 따라 행정 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 따라서, 동 장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입법 오류에서 발생한 문제를 사업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아울러 행정처분 시 행정처분의 효과보다는 처분 당사자의 불이익(기업이미지 훼손, 계약해지 등)이 커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청에서는 진행 중인 해당 행정처분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또한 ‘진탕수육조’를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조속히 삭제 조치 하도록 「먹는물 관리법」 소관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의한 지역 영세업체의 불이익을 예방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쿠아리움을 건립하고자 하나 재정여건상 직접 투자는 어려워 민간투자업체에 균유지를 매각하여 민간 투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투자제안 업체에게 균유지를 매각해야 하나 현재 공유재산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특정업체에 수의매각이 불가하여, 공유재산 매각 시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으로 매각하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특약등기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지명경쟁 매각 및 담보성 특약등기를 하기 위한 적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 매각) 및 제37조의3(용도지정 매각)

쟁점 사항

-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공개경쟁으로 국유재산 매각 시 투자제안업체가 아닌 제3자가 낙찰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쿠아리움 건립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그러나, 공유재산법령에는 특정업체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용도를 지정한 지명경쟁 매각 및 담보성 특약등기에 대한 적용 규정 또한 불명확하여, 공유재산을 투자제안업체에게 매각하여 해당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공유재산법령을 검토한 결과, 당장 공유재산을 특정업체에 수의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장기 수의대부계약으로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수족관 포함) 건립을 위해서 투자업체에 20년까지 수의대부계약이 가능하며,
- 대부한 공유재산에 투자업체의 영구축조물(수족관) 축조 후 대부계약이 만료 되는 때에 매각이 가능하고, 대부로 감면을 통해 민간투자업체 사업비 부담 경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방안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확인·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러한 공유재산의 先대부 後매각이라는 대안제시를 통해 투자업체의 목적 사업 추진을 담보함으로써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에서 '레미콘 제조업'으로 업종변경 신청을 하자 인근 주민의 환경문제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불승인 처분 하였다.

이후 입주업체는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청구를 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장기 간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기업체 애로가 가중되고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사전컨설팅 신청을 통해 항소제기 여부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의2

쟁점 사항

- 신청기관에서는 업종변경 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업종 변경을 불승인 하였으나, 입주업체는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에서 '레미콘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은 행정청의 승인 대상인지 또는 신고 대상에 불과한 것인지가 쟁점인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신청기관의 1심 패소에 따른 상급법원의 항소제기 여부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사례의 해석이나 판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입주업체가 ‘콘크리트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승인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와 동일한 업종분류에 속하는 세부업종인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한데 불과하여 이러한 변경신청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청은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다른 실제적인 사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청기관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A재단법인은 단독주택 내 일부를 작은도서관(연면적 94.84㎡)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5년 간 운영 중에 있었다. 해당 작은도서관에 대해 건축법령 위반 민원제보가 있자, 신청기관에서는 무단용도변경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와 건축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도서관법」 제31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쟁점 사항

-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서는 「도서관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일정 시설만 갖추면 등록·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 건축부서에는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의 공공도서관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독주택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해당되어 단독주택에서는 운영이 불가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도서관법」에 따르면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시설을 갖추면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하며, 건축법령에서도 작은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반드시 용도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건축법령에서 근린생활시설로서 용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은 공공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은 있으나, ‘업무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건축법령상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예시적으로 나열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두 공공성을 띄는 업무시설이며, 작은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해당 사항이 명확히 법령에 규정되어 가능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은 보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신청기관에 통보 하였다.
- 또한 관련법령에 단독주택에는 ‘가정용어린이집 · 공동생활가정 · 지역아동센터 · 노인복지시설’이 포함되지만,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였으며,
- 이를 통해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인 독서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주민 편익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에서 정수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철거되는 기존 상수도관을 시공 중에 발생하는 부산품으로 판단하여, 설계시 고철대금을 재료비 공제항목에 반영하여 총액 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고철가격이 설계시점보다 약 49%하락하여 도급업체에 손실발생이 예상되었고, 이에 기존 상수도관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사전 컨설팅감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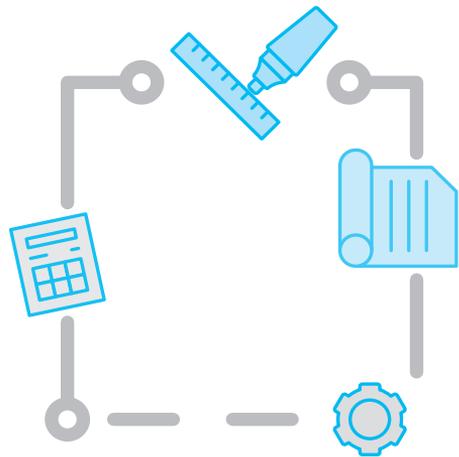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쟁점 사항

- 계약금액이나 대가지급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이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에 대하여 재료비에서 제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비목을 삭제하고 별도의 물량을 산출하여 발주기관에서 매각 등 세입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공사목적물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은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료비 공제대상으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이 별도 매각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 해당 공사의 설계서에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이 재료비 공제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설계서의 오류'로 해당 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하였다.
- 해당 건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철가격 하락으로 인한 도급업체의 손실을 예방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의용소방대에서 화재출동 등 업무를 위해 119지역대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인근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통합 운영하면서 기존 119지역대 건물이 불필요해졌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19지역대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용도폐지 후 매각 처분을 위해 도비 보조금 교부권자인 상급기관에 협의 요청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처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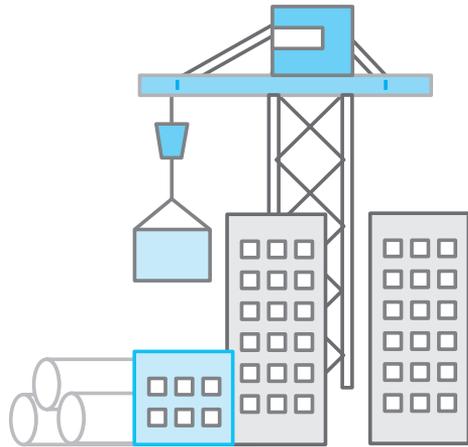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6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쟁점 사항

-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의 규정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처분·관리 기준이 없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때 보조금 교부권자인 상급기관(도)과 협의를 해야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현행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승인이 없어도 처분이 가능하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급기관이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처분이 가능한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 사용기간은 교부의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동 기간 내 처분을 하려면 조건을 정해놓은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사안은 현행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보조금 교부자인 상급기관에서 동 재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신청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를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업무를 효율화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구청이 보조금을 교부한 보조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어,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 가압류되고 경매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보조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어려웠다. 신청기관에서는 동 건물이 경매될 경우 관리관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 경매될 경우 승인요청 및 승인방법 등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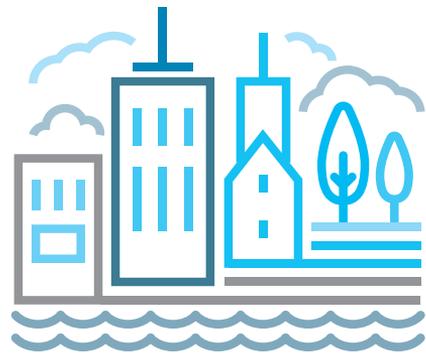
쟁점 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이 경매될 시 관리관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보조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보조사업의 지속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관련 법령의 취지로 볼 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권리변동은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 현재 해당 보조사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취하된 상황으로 강제 경매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승인요청 여부’ 및 ‘승인권자의 승인 여부’는 핵심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보조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점, 여러 기관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점, 해당 자치구의 지속적인 경영 정상화 수행명령이 있음에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교부 취소 등의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를 결정한 후 승인하여야 함
- 이를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권리변동 요건을 명확히 하여 승인 없는 양도 등의 처분을 예방하였고, 정상적인 보조사업 수행 불가로 교부 취소 등 사후조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에서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았고, 인증기관에서는 내부시설의 모든 단차에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기관에서는 체육센터 내 무대가 협소하여 경사로 설치 시 무대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무대 경사로 설치의 심사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인증기관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BF 인증 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2조 별표5

쟁점 사항

- BF 인증기관에서는 내부시설의 모든 단차에는 의무적으로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 신청기관에서는 심사기준의 내부시설 인증지표는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뿐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 요구는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BF 인증처리 기간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컨설팅 감사결과

- 무대의 단차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건축물’에서 ‘평가항목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무대의 단차를 제거하여 상을 받거나 강의를 하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아울러,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일 경우에는, 계단이 설치된 공간에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BF인증 처리 기간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호에 근거하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인증심사 단계에서의 설계 보완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인증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다.
- 따라서 무대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과 BF인증 처리기간이 인증 기준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였고, 이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하였다.



🔍 컨설팅 요청 내용

△△시에서는 책임읍면동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종전 시청의 업무였던 각종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책임읍·동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 현장중심 및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군 본청의 복지·인·허가 등 주민밀착 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하여 원스톱 일괄 서비스 제공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에 필요한 시청의 권한이 책임읍면동에도 부여하여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 및 시스템상 읍·면·동 담당자에게 시청 담당자의 권한을 부여하기는 곤란하여, 일부 권한만 부여된 상황이다.

이로인해 책임읍면동 업무처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시청 담당자의 사용자 권한을 읍·면·동 담당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권한 체계

- (시·군·구) : 대상자조회, 상담입력, 조사, 결정, 급여지급(시 전체가능)
 - (읍·면·동) : 대상자조회, 상담입력, 신청(관할 읍·면·동 거주자만 가능)
- ※ 근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2016. 1. / 보건복지부)

📖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지침」

쟁점 사항

- 시청 담당자의 사용자 권한을 읍·면·동 담당자에게 부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반면, 읍·면·동 담당자의 권한을 제한할 경우에 책임읍면동에 위임된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컨설팅 감사결과

- 본 사안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시 본청 소속 또는 읍·면·동 소속의 여하에 따라 그 업무 처리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 다만, 동일한 시·군 소속 공무원이지만 세부적인 소속으로 읍·면·동을 구분하였던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책임읍면동제에 적합한 ‘행복e음 시스템’의 권한관리 기능 개선 전까지 책임읍면동 담당자에게 일시적으로 시·군·구 본청의 권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되,



-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자체 관리 강화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를 통해 책임읍면동 담당자가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자체 관리 강화책 마련으로 권한 획득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 및 행사 등의 물품 찬조, 장학금 기탁 등 기부가 수시로 발생하나 대다수가 재산가액이 크지 않은 물품 기증으로 심사 없이 취득·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렵고 시기가 급박하여 절차 없이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15명(민간·공무원) 이내로 구성

기부금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자체 심의기구를 통해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쟁점 사항

- 원칙적으로 기부금 심사를 민간인이 포함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나, 자체 심의기구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의 모집과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에 대해서만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접수를 허용하고 있다.
- 이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강요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 손실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부금품 모집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아니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의 객관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여 불필요하고 부적정한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따라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심사절차 간소화는 곤란하다고 신청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일선 행정청이 임의적인 절차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여 법령이 정한 취지와 부합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과 상이하게 시공이 되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신고) 이행 없이는 사업 준공이 불가능하고, 시 교통운영과에서는 변경심의 신청 시기가 지나 당초 심의의결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 미준공으로 인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주체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쟁점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상 인가설계서에 따라 시공을 완료 하였다.
- 그러나 실시설계인가 조건(우측보도 3m, 옹벽포함)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내용(우측보도 3m, 옹벽제외)이 서로 달라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이행 없이는 사업 준공이 불가능 하나, 소관 부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신청

시기가 지나고 신청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변경인가신청서를 회송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위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해당 호선의 준공을 허가하고 성실히 관리하도록 합의 권고하였고, △△지방경찰청으로부터는 “차로 폭을 조정하여 보도폭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두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면, 2개의 차선 폭 조정을 통해 교통영향평가심의 결정사항인 보도 폭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 이에 2개의 차선폭을 조정(3.75m→3.25m)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 결정사항인 보도 폭(3m)을 확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준공처리하도록 소관 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에 장기간 사업 미준공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민원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준공처리를 통한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에서는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가 없어 개인시설장에 대해 퇴직적립금 적립을 금지하는 「개인운영시설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관련 지침」을 시행 중이다.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개인운영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원 여부는 보조금 지원 주체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1인) 대표자의 퇴직적립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해법을 구하는 컨설팅 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81조

쟁점 사항

-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운영 특성 상 1인 사업으로, 시설장이 사회재활교사를 겸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
- 또한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이익을 목적

으로 운영하는 사업장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운영자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노고를 반영하고 복지적 측면에서 퇴직적립금이 필요하다.

- 그러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로 시 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15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개인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해 퇴직적립금 적립을 금지해 왔다.



컨설팅 감사결과

- 1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시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1인이 시설장과 사회재활교사를 겸하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 또한 시 사회복지과의 「개인운영시설 시설장 퇴직적립금 적립 제한 방침」에도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제한 대상시설을 '2인 이상 시설'*로 보고 있는 만큼, 1인 시설의 대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며,
 - * 2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대표 겸 시설장에게는 퇴직금 적립 제한이 가능
- 이에 따라, 1인 운영 장애인 시설의 개인 시설장에 대한 퇴직적립금 적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 동 사안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도 동일한 의견 제시
- 이 컨설팅을 통해 1인 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설 운영자의 복리를 증진하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 소유재산 대부 시, 공용면적(진입로)에 대한 점유면적(공장) 대부 비율에 따라 공용면적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 필지 내에 여러 업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의 대부료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필지 내 공용면적(진입로)을 사용하는 업체에게 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현재 대부료 부과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제35조

쟁점 사항

- 현재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대한 대부료 산정은 실제 사용자의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며, 공용면적 미사용 업체에는 대부료를 미부과하고 공용면적을 사용하는 업체에만 비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 따라서 공용면적 사용자가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경우 등 공용면적 사용자 변동이 있을 경우, 공용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대부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근거 법률은 “대부료는 공용면적을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별도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공유 면적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까지 대부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그러나 민원이 제기된 부지는 소관 구청에서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고 공용부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점유부지를 이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현황도로이다.
- 이에 따라, 민법 제220조의 주위 통행권을 이용하여 본인의 점유부지를 이용하기 위한 일부의 공용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이 가능할 것이며, 통행권 확보를 위한 면적은 소방차 폭 등을 고려하여 통행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지정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을 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영세업체들의 대부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에 군 예산 70억 가량을 투입하여 생태수변공원을 조성하였다. 군은 경관을 위해 충분한 저수량을 확보하기를 원하나, 저수지 용수를 이용하는 농민들은 경관 확보 보다는 농업용수의 이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군의 적정 유지수위 확보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해당 군과 공사는 저수지의 용수의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낙동강 변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을 가동하여 관계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추진하면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 공사는 국가공기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쟁점 사항

- 저수량의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양수장을 가동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양수장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해야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서로 상충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군에서 국가공기업인 농어촌공사로의 보조금 지급은 불가하지만, 군에서 양수장 가동을 추진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의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비용의 지급방법을 보조금 형태가 아닌 실비정산 방식의 사용료(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 발생된 비용은 보전해 주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 아울러, 실비정산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보조금 형태의 지급보다 실제 사용된 전기료 등을 정산하는 것이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을 통보하였다.
- 이를 통해 생태수변공원의 적정 수량 확보와 농업용수 공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생업지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교육부의 정서행동 발달검사를 통해 분류된 영남권 고위기청소년의 수의 비율은 전국대비 26%(관리군), 21%(우선관리군)에 달하고 있지만, 매년 디딤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영남권 청소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 정서·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와 치료, 자립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치료 효과가 높은 거주형 치료재활센터가 지역에 설치되면 청소년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성가족부의 디딤센터 추가건립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역 디딤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역에 유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은 소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으로 “국가는 국가가 설립·조성·운영하는 시설의 신설·확장 등에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사전 컨설팅검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쟁점 사항

- 국가시설 신설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 및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부담했을 경우 법령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법제처, 행정자치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법령유권해석이 서로 달랐다.



- 법제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3항은 국가는 기관의 시설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국가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 행정자치부와 시 고문변호사 등은 국가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건설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사전 컨설팅감사에서는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부담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뿐 아니라, 디딤센터가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였다.
- 검토 결과 지역에 많은 수의 고위기청소년들이 있어 국가시설로 유치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중요성이 인정되고, 센터 설립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입도로 설치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국도 횡단구간에 지질조사결과를 기초로 내부 굴착토사를 경질토사로 적용하여 강관압입 공법(유압식)으로 굴착을 진행하던 중, 강관압입 3.0m 지점부터 도로건설 당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발파암이 발견되었다.

현장관련자들의 내부 검토 결과 타 공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작업 중 토질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계속 작업을 시행하였으나, 토질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일일 작업속도가 설계(2.1m) 대비 한참 못 미치는 1.4m로서 손실이 발생하자 실제 작업 여건 반영을 위한 단가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계약예규에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계변경을 거부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쟁점 사항

- 시공자는 단가산출서의 산출근거는 암(巖) 출현을 고려하지 않은 단가로서 실제 현장여건 및 작업의 효율이 계약된 비용과의 차이가 크므로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 반면 발주처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요건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 이때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한정되므로 단가산출서의 오류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서로 상충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이 건은 지질의 상태가 설계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현장 여건의 상이 혹은 설계서 오류로 인정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발주자의 설계 잘못이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전가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다.
- 일반적으로 설계서는 지질조사, 측량 결과 등 사전조사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고, 이 건은 지질조사의 오류 때문에 현장여건과 상이한 단가산출서가 작성되었다.
- 따라서, 단가산출서는 계약예규에 명시된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지질조사의 오류로부터 시작된 설계서의 오류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표준품셈에는 암버럭*에 대한 강관압입품이 없으므로 그 비용에 대하여는 실 투입을 산출하여 정산하라는 추가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 바위 파쇄 후 남는 조각, 즉 쪼개진 암석을 뜻함

컨설팅 요청 내용

△△시 시설공단은 폭 20m 이상 주요도로의 제설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해당 지역의 경우 동절기 제설작업이 필요할 정도의 강설이 자주 발생하지 않아 비축량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동절기 제설에 사용하는 제설제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안 될 경우 차년도 사용을 위한 보관 및 관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또한 제설을 위해 2~3일분의 제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눈이 연속적으로 와서 비축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긴급하게 구매를 하여 다음 강설에 대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때 긴급입찰을 하더라도 1주일 이상이 소요되어 눈이 더 오는 경우 대비가 어려우므로, 사업부서에서는 기간단축을 위해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부서에서는 감사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쟁점 사항

- 사업부서에서는 겨울철 강설의 연속으로 보유중인 제설제가 모두 사용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구매기간을 단축하여 물량을 확보하자는 의견이다.
- 반면, 계약부서에서는 천재지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겨울철 강설은 당연한 자연현상인데 매년 천재지변으로 인정하여 수의계약 하는 것은 곤란하며, 어느 정도 눈이 왔을 때를 천재지변으로 보아야 하는 지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이 건의 경우 수의계약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충분히 현행 규정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나,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입장 차이로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매년 되풀이 되는 논란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검토하였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천재지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역의 평년 기후와 달리 제설이 필요한 수준의 강설이 연속되어 비축된 물량이 전부 소진된 경우 추가적인 강설이 온다면 대응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잦은 강설은 제설자재의 품귀 현상을 유발하여 자재 확보의 어려움과 동시에 가격의 상승 또한 동반하게 된다.
- 사전 컨설팅감사에서는 신청된 경우와 같이 강설이 연속되어 보유물량이 모두 사용되었을 때 계약의 절차나 납기보다는 물량의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보다 기존 거래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데에 착안하여, 이러한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될 뿐 아니라 사용수량으로 정산하여 재고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안으로 검토하도록 권고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다.

🔍 컨설팅 요청 내용

△△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빵사업장을 분점으로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군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상 소재를 달리하는 사업장을 분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사업장 대표는 타 시·도에서는 분점이 인정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에서 분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해당 군에서 분점을 인정하지 않아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 감사관실에서는 군 담당부서에 연락을 하여 해당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해결할 방법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쟁점 사항

- 군 담당부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시설 1소재지가 원칙이며, 분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인정될 수 없고, 무분별하게 분점이 인정 될 경우 관리감독의 어려움 있다는 의견으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다.
- 반면, 장애인 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에서 분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시설이 신고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분점이 인정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분점을 신청한 시설이 군 소유의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고 본점과의 직선거리도 350m 가량 떨어져 있어 관리감독도 용이하므로 분점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직업재활시설의 산하 사업장(분점)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시설이 신고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장(분점)의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여부, 시설 운영상 추가 설치에 따른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안전관리, 종사자 배치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회신 받았다.
- 사전 컨설팅감사에서는 분점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시설의 기준은 만족해야 하고, 만약 분점 시설이 신규로 허가 신청된다면 시설기준을 만족할 때 허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착안, 신청된 분점이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였다.
- 우선, 군에는 해당 시설이 분점 형태가 아닌 신규로 신청이 될 경우 허가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장애인 사업장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시설로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시설이 법령상 시설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자체 점검(필요시 보완) 하도록 하였다.
- 최종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분점 시설이 신규 법인설립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한다면 분점을 인정하라는 의견과 더불어 분점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라는 권고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현재 암모니아(NH₃) 공급업체에서 사용 중인 부두의 수입라인을 2018년 8월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항구 내 다른 부두로 배관을 이전·매설하여 안정적으로 화력발전소, LNG발전소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배관 매설을 위해서는 도로굴착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 항구 일원 2개 도로에 굴착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 각각 2017년, 2015년에 준공된 도로로 「도로법 시행령」제56조 제6항에 따라 도로준공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도로굴착이 불가하며, 암모니아(NH₃) 배관 매설의 경우 굴착불가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쟁점 사항

- 암모니아(NH₃)를 공급하고 있는 해당 업체는 현재 연매출 500억원에, 해당 권역 암모니아 공급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 산업시설이다.
- 그러나, 도로굴착이 불가할 경우 2018. 8월 이후 기존 부두를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 배관매설이 완료되는 2021년 상반기까지 암모니아 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 암모니아 저장 탱크시설과 운송시스템 등을 2~3년간 잠정중단 시에는 액체 등의 응고로 시설 부식과 노후화 및 운송업체 도산 등으로 재가동이 어려워 공장을 영구히 폐쇄할 수 밖에 없어, 업체 측에서는 도로점용 불가 시 타 시·도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위 사안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서는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본관 및 공급관)을 설치하는 공사’는 예외로 하고 있고,
- 같은 령 제62조에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체의 암모니아 고압가스관로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는 도로관리청의 재량행위로서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교통에 공용을 위한 도로 기능상실) 등을 참작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소관기관에 통보하였다.
- 또한, 택지개발 및 항만 배후단지 사업 등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로 개설(포장)시 사전에 유관기관의 관로매설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방안을 강구하여,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

④ 컨설팅 요청 내용

공장부지 진출입로 상에 국토부 소유 제방이 있어 16개 중소기업들이 공장 건축 허가(신고)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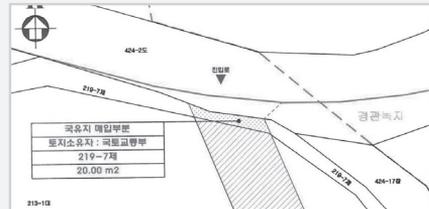
해당 제방은 1967년 이전부터 매립에 따른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1989년 주변지역 매립으로 제방의 기능이 없어진 상태로, 2017년 3월 국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을 해당구청에 요청하였다.

위치도

주변 개발계획도



상세 지적도



④ 관련 법령

- 「국유재산법」 제40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쟁점 사항

- 16개 중소기업들이 해당 구청에 요청한대로 국토부 소유 제방의 용도폐지 및 특혜논란에 따른 수의매각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해당 제방의 경우 1967년 항공사진 확인결과 오래 전부터 매립지역의 제방으로 이용되어 왔고, 1989년 항공사진 결과에 의하면 주변지역이 매립 완료되어 제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1998년 소관 구에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및 2001년 도로점용허가 갱신 처리한 사항 등을 볼 때 제방으로서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일반재산 처분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기업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가 폐도 등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수의매각이 가능하므로 본 민원을 해소하도록 소관 구에 통보하였으며,
- 이를 통해 16개 중소기업의 공장 건축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장부지 차량진출입로 앞에 경관녹지를 임의 지정함으로써, 인접한 토지들이 맹지가 되어 공장 건축허가가 불가한 상태가 되어 15개 중소기업이 고충 처리 해결을 요청하였다.

민원인의 공장 건축허가를 위한 완충녹지 해지요청에 대하여, 관련기관들은 '개발 사업시행자가 답변할 사항이다', '변경 요청이 접수되면 검토 추진하겠다', '진입로 사용을 위해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으로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고 있었다.

관련 법령

- 「공원녹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8조

쟁점 사항

-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녹지 설치 시 기존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위해 녹지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 소관 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을 변경할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따른 절차이행 등의 부담감으로 해지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관련기관 확인결과 해당 녹지는,



- 1998년 소관 구청장으로부터 도로굴착 허가 받아 관로매설공사, 2001년 도로점용 허가 갱신 등 지속적으로 진입도로로 사용하였고,
-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항공 영상 등에 의거, 지구개발계획수립 이전부터 민원인 토지에 대한 진출입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경제청)는 민원인 토지의 진출입로 부분을 경관 녹지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정하여 맹지가 된 상황이다.

● 판결 및 유사사례 확인 결과



- 대법원은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완충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완충녹지 안에 별도로 진입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완충녹지에 이미 형성된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으며,
- 유사사례로 관할 국제도시 내 개발사업으로 지구경계의 일부 부지가 맹지가 됨에 따라, 해당부지의 건축허가 및 차량 교행통행 도로(폭6m)를 반영하고자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를 일부 해제하여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 컨설팅 의견



- 민원인 토지가 맹지가 되어 건축허가가 어려운 점과 그 동안 진행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원인 토지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해당 지구 경관녹지 일부를 해제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 개발사업시행자는 지구 변경승인을 즉시 신청하고, 소관 경제청에서는 즉시 변경승인 처리하여 민원을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다.

🔍 컨설팅 요청 내용

민원인이 물류단지에 호텔 건축을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 해당 물류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상 판매 및 업무시설로 건축물 높이는 ‘도로 사선제한²⁾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민원인은 이 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60조 ※ 2015. 5. 18. 폐지

우리나라 도시기반시설 · 건축의 현 주소

수요자 무시 건축기준 사례

- 도로 사선 제한

- 사업성 하락
- 설계 창의성 제약
- 불법 유도



🔊 쟁점 사항

-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도시 미관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前面)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 하였으나, 2015. 5. 18.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였다.

2) 도로사선제한[道路斜線制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 중 하나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을 말한다. 건축물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건축주의 임의대로 높이를 결정하면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 건축물 각 부분을 부지의 전면 도로 반대측 경계선에서 부지 내의 상공을 향해 일정한 각도로 그은 사선의 안쪽에 제한하는 규정[NAVER 지식백과 건축용어사전 인용]

-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할 시 기형적인 계단형 건축물이 양산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사업성 하락 및 설계 창의성 제약, 준공 후 계단 부분을 증축하는 불법도 야기되는 등 문제가 있는데,
- 2012. 12월 국토해양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물류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물류단지계획 5차 승인고시」의 지원시설용지, 판매 및 업무시설의 높이 난에 ‘도로사선 제한’ 적용으로 계획되어 있어 현행 건축법령과 고시 내용이 불일치되는 상황이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인근 시의 경우 2015. 5. 18.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의 과도한 높이가 예상되는 지역(준주거, 준공업, 상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 계획’으로 2016. 6. 30. 변경고시 하였고,
- 2015. 4. 30. 국토교통부 도로사선제한 폐지 의견을 보면,



–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91조³⁾에 따라 건축법 개정시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도로 사선제한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구청에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

3)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신도시 내 지하유출수가 해역으로 방류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비 과다 증가 및 재이용률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에 지하유출수 배출설비 전수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관련 기관 간 책임전가 및 업무 기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관련 법령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쟁점 사항

- 업무주관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간 이견으로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었다.

- 市 하수과 : 지하유출수(해수) 하수처리장 유입으로 예산낭비 및 재이용 불가, 경제청 및 소관구청에 조치계획 수립 요구
- 경제청 :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소관 구청에서 조치, 지원은 가능
- 관할 구 : 하수관로가 아닌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市 차원에서 조치 필요



컨설팅 감사결과

● 문제점 진단



- 지하유출수 유입으로 하수처리비 추가 소요 : 약 24억원/년
- 하수재이용시설(2개소 운영) 생산량 부족에 따라 연간 5억원 운영 손실 발생
 - 2016년 시설운영비(569백만원) 대비 재이용수 생산량이 276천톤/년으로 매우 부족
 -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연간 1,227톤 이상 생산 필요
- 하수재이용시설 가동률 하락으로 투자비 매몰 우려
 - 하수를 재이용한다는 부정적 인식과 높은 염화물 농도로 인해 재이용수 수요처 지속적으로 감소
- 하수재이용시설에 역삼투설비 추가 시 과잉투자 우려 : 약 340억원

컨설팅 의견



- 해수가 포함된 지하유출수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하수로 「하수도법」에 따른 ‘제해시설’* 설치대상으로 볼 수 있고, ‘제해시설’에 대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지하유출수 배출설비 전수조사 및 정비를 조속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통보하였다.
 - * 폐수를 공공 하수도에 방류하기 전에 폐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처리 시설
- 또한, 지하유출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자는 관리청에 사용신고토록 「하수도 사용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경제성을 적극 홍보하여 재이용수 수요처를 추가 확보토록 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역삼투설비 추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하수 재이용시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신설도서관 개관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도서구매를 위해 입찰참가 자격을 2개 항목으로 중복 제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있었다.

- 항목 1 : 입찰공고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시내에 소재한 업체
- 항목 2 : 서적 도·소매업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소지에 방문매장을 두고 운영 하는 지역서점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 「지역서점 활성화 협조(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2015.8.7.)」

쟁점 사항

- 계약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제한기준과 방법에 따라 2개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과도한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 사업부서에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에 소재한 업체로 주소지에 방문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지역서점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신설도서관 도서구매를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관할 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서적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소지에 방문매장을 두고 운영하는 지역서점으로 제한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한입찰의 중복 제한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었다.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출판인쇄산업과-1606(2015.8.7.)호 「지역서점 활성화 협조」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해당 지역에 매장을 갖춘 서점) 우선 활용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시 문화예술과에서 「공공기관 도서 구입 시 인천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공문을 통보하여 해당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입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 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된 (가칭) 자료선정위원회 등 설치를 통해 선정하는 방안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14.11.21.) 개정에 따라 도서구입계약 시 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대량의 일괄구매보다는, 이용객 수요조사 등을 통해 소규모 수시 구매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건축을 위한 개발 행위허가의 조건이 되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세부적인 검토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미만인 경우 3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있는 경우 「개발 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4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막다른 도로의 진입도로 폭이 3m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른 4m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들의 토지사용 승낙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거절하여 민원이 발생하였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모순으로 어떤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사전 컨설팅검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4항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1-2

쟁점 사항

- 기존에 3m의 진입도로에 접한 대지 중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는 「건축법」을 적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 반면, 인접한 토지라 할지라도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대지는 4m의 진입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컨설팅 감사결과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지와 도로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4항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이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4)에 따르면, 진입도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진입도로 중 일부 구간의 폭이 기준에 미달하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인접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소관 구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도로폭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 경사도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평균경사도 16.5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평균경사도가 19.9도인 개발행위 대상지에 대하여 인근여건, 국토의 활용, 도로기능 상실 등으로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 한지에 대한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2]

쟁점 사항

- 신청 토지는 도로개설 후 경사지로 존치되어 있었고, 또한 인근 토지의 도로개설 후 잔여지로 존치되고 있다가 용도폐지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항이다.
-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시 토지 평균경사도 기준이 16.5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별표1-2)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4)'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절 분야별 검토사항’에서도 상기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소관 구의 「도시계획조례」 제2조(기능)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
- 따라서, 상기 관련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신청 토지 인근 지역의 특성 및 개발상황, 기반시설 현황, 사업특성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경사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3. 2. 5.)으로 전기자동차용 충전 설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시설로 추가되었는데, 기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컨설팅검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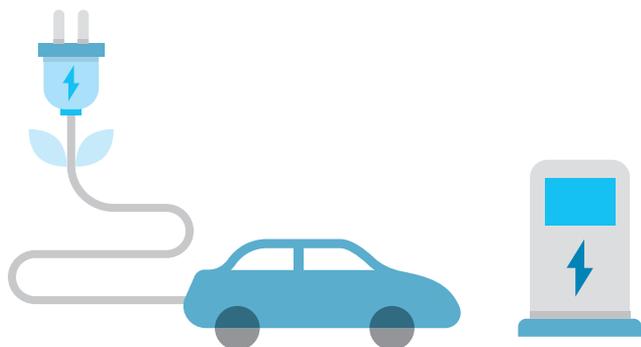
- 「△△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2. 12. 31.) 제4조제3항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2013. 2. 5.)

쟁점 사항

- 기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허용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9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해당하는 시설로 정해져있었다.
- 그러나, 기존 적용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허용되는지여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이 있는 사항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지구단위계획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기존 지침 시행 이후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기존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를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13. 2. 5.)개정으로 시설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결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06년도에 완료 되었다.

그러나,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한 입주업체는 면적 정산 시 줄어든 면적에 건축을 해야 했으나, 최초 분양받은 면적에 건축함으로써 인접지 소유자 토지를 침범함에 따라 두 업체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 토지를 분할하여 정리하고자 하였지만 관련 법령이 공업지역의 분할면적을 15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민원인의 피해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9조의3 제2항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3호

쟁점 사항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전에 당초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건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준공 후 정산되는 과정에서 당초 분양 면적보다 감소되었고, 공장건물의 일부가 인접 공장에 중복(침범)된 사항이다.
- 1999. 2. 8. 「건축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대지의 면적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조잡한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일부 개정 하였다.

- 이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으로(공업지역 : 150㎡) 분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분할이 금지되어 개인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감사결과

- 산업단지 조성 이전 도면상 분양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건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산업단지 준공 정산결과 면적이 일부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 신규로 소규모 대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건축법」 제49조의 일정규모이하 일률적 분할제한(공업지역 : 150㎡ 이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민원인은 분할을 통한 매매로 이익 취득의 목적이 아니며 민원인 상호간 공장이 준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 현재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할의 법적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장을 개축하여야 하는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이번 컨설팅으로 지적부서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정산면적 차이 만큼 분할하여 합병할 수 있도록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국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원을 해소 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구에서는 종합시장의 고객 및 상인의 편의향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 토지에 '종합시장 지하주차장 및 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고객지원센터 사업은 2018년도에 확정되었다.

그러나, 확정된 2건의 사업은 사업종류와 시기, 국비의 성격(기금/지역발전특별회계)이 달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 시 먼저 시행하는 지하주차장의 상부에 고객지원센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향후 고객지원센터 사업 추진 시 추가 보강공사 필요 등 구조적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통합설계 추진 가능 여부를 구하는 사전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 2. 23.)

쟁점 사항

- 중소기업청에 문의한 결과, 향후 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업 시 추가 보강공사 필요 등 구조적 안전상의 문제로 통합 설계의 필요성과 합리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별 예산으로 지출할 것을 권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移用)할 수 없고, 통합 발주 계획 시 국고보조금이 부처 별로 교부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통합발주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차년도 보조사업 예산을 미리 사용 할 수 없고, 통합 발주 계획 시 국고보조금이 부처 별로 교부 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나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예산반영을 통해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종합시장 지하주차장과 고객지원센터의 실시설계 용역을 통합 발주하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의 실시설계 예산을 2017년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가 반영(구비·추경)하여 통합 발주하도록 권고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준수와 동시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는 산업시설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균형 있는 국토개발 및 지속적인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 대행 등(전·책임감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업무 주체에 대해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PQ)서 제출 안내 공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이행 가능한 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제1항

쟁점 사항

-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시행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첨부하여 회계부서에 계약의뢰 하였으나, 「지방계약법」 제14조 4항, 「지방재정법」 제9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 절차 이행 후 계약의뢰 하도록 사업부서로 회신함으로써 부서 간 업무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대립하였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 대행 등 용역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진행해야 하나,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 이에, 사업부서에서는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절차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추진해 왔으나, 이번 사업부터는 국토교통부 훈령의 절차를 준용하여 회계부서에 계약 의뢰하였지만 사업부서와 회계부서 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석의 이견으로 대립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업무의 성격상 입찰의 사전절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의 답변내용 등을 참조하여,

- 회계부서는 “입찰참가자격조건 등 용역집행공고문 작성, 입찰참가자격 등록 접수 시 참가자격 확인, 가격입찰공고, 개찰,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 사업부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작성 및 평가 업무수행, 관계부처 법령해석 및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수행하도록 부서에 통보하였다.



- 이 컨설팅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불명확한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 간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 지적부서에서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면적이 증가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토지소유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던 중,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기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분할납부의 효용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납제도가 오히려 민원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제시를 구하는 컨설팅 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쟁점 사항

- 관련 법령 상 분할납부도 일시납부와 같이 납부기한이 6개월로 동일하다.
-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 상 분할납부와 일시납부 기한이 동일할 경우 분납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굳이 나누어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컨설팅 감사결과

- 해당 문제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질의한 결과,

-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분할 납부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령 개정 전까지는 현행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법제처는 분납 시 1회당 납부기한을 6개월로 해석하여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시 감사부서에서는, 법령개정 전까지는 자체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적정한 분할납부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체납으로 인한 채권확보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부기간을 정하도록 컨설팅 하였고, 이를 통해 일시 납부로 인한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 환경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비 79억 원에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3.7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산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용역업체가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면서 발생한 차량판매대금을 용역 비용 정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컨설팅감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제2016-108호)

쟁점 사항

- 관련 규정에서는 감가상각비 정산에 대한 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한계가 있다.
- 환경부서는 기존 차량의 소유권이 업체에 있기 때문에, 차량의 처분수익은 업체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컨설팅 감사결과

- 관련 규정과 계약서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따른 정액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회계연도마다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

- 또한 정액법에서는 차량에 대한 잔존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차량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감가상각비에 반영하여 금액 정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컨설팅의견을 제시하여, 용역업체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민원인은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민원을 제출하였다.

소관 시청의 산림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의 지목은 '임야'이기 때문에 산지일시 전용허가 또는 굴취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며, 민원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해당 부지는 실제 임야가 아닌 하천지역으로 별도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하는 등 민원인과 산림부서 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해법 제시를 구하는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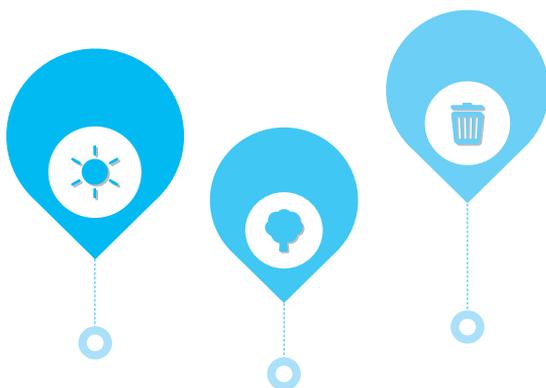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산지관리법」 제2조

쟁점 사항

- 해당 부지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임야로 보기 어려운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산림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도 추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민원인의 사업지연 및 금전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

컨설팅 감사결과

- 「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임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토지 중 「하천법」에서 정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포함된 지역은 산지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확인 결과, 이 토지는 지목 상 임야이기는 하나 2009년 12월 30일 국가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보기는 어려웠다.
- 또한 하천구역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가 집중호우 시 우수 흐름을 방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제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출을 허가하도록 컨설팅 하였다.
-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 할 수 있었다.



🔍 컨설팅 요청 내용

1964년에 설립된 공장이 약 50년 이상 경과되면서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생산라인 구축을 위한 공장 증·개축이 절실했으나, 1976년에 공장부지 면적 절반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하나의 필지가 준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양분된 상황이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공장 증·개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 관련 법령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1-5-3-2 및 3-1-9-4, 4-3-3-1

쟁점 사항

- 「도시기본계획」 상 해당 공장부지의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 공장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시 주거지역과의 완충 공간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행정자치부 주관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14. 11. 13.)의 후속 조치로, 용도지역이 기존 건축물 등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지침 개정 '15. 1. 27.) 하였으므로
- 개정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해당 부지 중 일반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기성 시가지 안에 있으므로 완충녹지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나,
- 주변지역이 주택 및 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연·소음·진동 등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 증·개축 계획을 확인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공장 증·개축이 가능하게 되어 180억원의 투자유발과, 약 100여 명의 직원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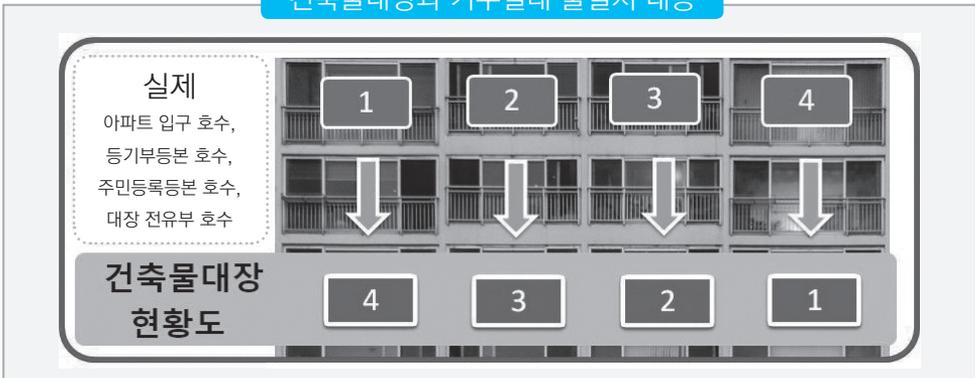
④ 컨설팅 요청 내용

아파트의 실제 거주 위치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가 불일치한 세대의 현황도 호수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 건축물대장은 사용 승인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정정이 불가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원사항에 대한 대안제시 등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건축물대장과 거주실태 불일치 내용



④ 관련 법령

-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18조, 제21조

쟁점 사항

-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실제 건축물 입구의 호수 표시가 동일하고 그 호수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하는 호수의 현황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실제 거주 호수의 현황도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기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의 호수(기재내용) 정정이 불가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건축물대장이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에 첨부되는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었다.
-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① 실제 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건물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주소(호수 포함), 건축물현황(면적, 구조 등)이 일치하며, ②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만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 완료되는 경우, ③ 해당 건축물 소유자 전체가 건축물대장의 현황도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④ 해당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절차 진행사항이 없으며, 현황도 변경으로 인한 등기권리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신청기관에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도내 4,478 세대의 8,685억원(추정) 재산권 보호 및 분쟁발생을 예방하였다.

※ 2017년 말 기준 1,592세대(36%) 건축물대장 정정 완료

컨설팅 요청 내용

법원의 조정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어 업체 부지의 건폐율이 43.6%로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의 건폐율(자연녹지지역, 20%)을 초과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의 반 이상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부지 내에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고 2층으로 증축하여 건축물 대장 정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상기 규정은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부지’가 분할 전 토지인지 분할 후 토지인지 해석이 불분명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쟁점 사항

- 분할 후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상기 규정의 “기존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위 업체는 용도지역 변경* 전에 적법한 절차에 준공된 기존공장에 해당하고, 기존 공장이 설립된 부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된 상황이 있었고

* '03. 8월 용도지역 변경 : 준농림(건폐율 60%) →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

- 분할된 부지 중 기존 공장이 설치된 부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 부지로 볼 수 있으므로

* 분할된 부지 중 공장이 설치되지 않은 부지는 기존 부지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신청기관에 통보 하였다.

- 이러한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을 통해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증축이 가능 해짐에 따라, 폐업위기 공장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직원 50여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 주변 물류단지 조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가결을 의결하였다.

(조건1) △△묘 전면경관 악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개발한계표고를 낮추어야 되며, 급경사 지형을 고려한 도로선형 조정필요

(조건2) △△묘와 관련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전시관 건립 필요

위 위원회 결정에 대해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지'와 '조건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35조, 제71조, 제74조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제9조
- 「△△도 문화재 보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쟁점 사항

-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의 '조건부 가결'이 가능한지 여부와,
- 조건 중 “개발한계표고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을 개발한계표고부터 사업 구간 경계지점까지의 구간을 제척(제외)시키는 의미로 해석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운영지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의결의 유형을 가결·부결 등으로 구분하되 가결을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재구분하고 있는 바 이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 「문화재 보호 조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현상변경과 관련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성이 인정되므로 부관인 조건의 부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또한, 허가조건에 개발한계표고부터 사업구간 경계지점까지의 구간을 제척시키는 내용이 없고, 문화재 전면경관 악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개발한계표고를 낮추도록만 되어 있으며



- 허가조건이 제척시키는 의미라 하더라도 제척하라는 부지의 건축물은 앞부분 건축물에 가려 경관저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묘에서 바라볼 때 제척부지의 건물이 보이지 않으므로
 - 허가조건은 해당 지점의 사업부지 높이를 일정 부분 낮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소관 부서에 제시하였다.

- 이러한 합리적 의견을 통해 물류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1조 5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만3천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기대하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산악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민간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투자유치 방법 중 공모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공모 실시결과 1개 업체만 단독으로 신청하여 평가를 거쳐 실시협약(MOA)을 체결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조건을 요청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 방법 대신,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방법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컨설팅 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쟁점 사항

-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였으나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조건을 요청하여 협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 방법을 택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다.

- 컨설팅 신청기관은 관광투자유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지만, 일반적 투자유치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상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방식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 절차에 따라 설치하고, 현재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정하는 별도의 관련 법규나 선정 시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를 통해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 국내 투자자를 발굴하여 민간 사업자 선정 후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시·군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시 토지의 현황측량 등 기본적인 조사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조물의 사유지 침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후부터 개발행위허가 대상사무에 대하여 모두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부서 및 건축사 협회로부터 기존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개발행위허가의 업무가 추가 된 것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 인근 시·군의 경우에도 법령해석 여하에 따라 업무를 일관되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및 도내 시·군 개발 행위허가 업무에 대한 통일된 사무 처리를 위한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쟁점 사항

-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미실시할 경우 구조물의 사유지 침범에 따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

-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대상사무에 대해 모두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건축사 등으로부터 추가업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이다.
- 따라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없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과 함께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대한 통일된 사무 처리기준 마련을 통하여 무분별한 공작물설치로 인한 민원발생 등을 예방하고, 일관된 기준적용을 통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이 시행되면서, 적법화 절차 중 하나인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한우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은

- 이미 지어진 축사 대지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과,
- 축사 적법화 과정상 위반사항이 없으면 원상회복 없이 사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없이 개발행위허가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해법 제시를 구하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쟁점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별도 사후 추인 규정이 없다.
- 반면, 위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할 경우 축산업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행위, 토지 형질변경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며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지침’에서는 위반건축물 자진 신고 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경우, 원상복구 없이 인·허가를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민원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하여 다수의 축산농가가 원상회복 없이 개발행위허가 사후 추인으로 인하여 시간적·재정적 부담에서 해소되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열악한 환경속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다수 축산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행중에 있다.

컨설팅 요청 내용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에게 환경 대책 및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 배분되고 있다.

그러나 배분된 지원금을 읍·면·동 별로 재배분할 때 지원하는 배분 기준 및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 조정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액으로 배분된 지원금을 읍·면·동 별로 재배분할 때 적절한 배분 기준을 구하는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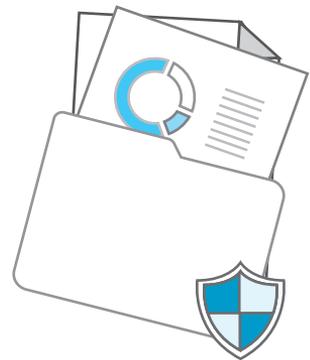
-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쟁점 사항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같은 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배분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그리하여 해당 시군에서 관할하는 댐 주변지역 각 지역에 대해 댐 관리청 및 수탁관리자가 시장·군수에게 배분하는 기준인 시행령 [별표 8]을 준용하여도 되는지가 관건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 배분기준을 보면 “1. 수몰지역의 면적비율 2. 해당 읍·면·동의 인구비율 3.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구역의 면적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댐 관리청 및 수탁관리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원금을 배분할 때 이미 해당 시군 읍·면·동의 지원금 기여분이 포함 되어 있다 할 수 있다.
- 따라서 해당 시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행령 [별표 8]의 배분 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를 통해 주민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별로 재배분할 때 배분 기준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조정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와 공단의 철도터널(지하차도) 공사 기간이 중첩되면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추진이 가능하였다.

시는 시공업체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는데, 해당 기간에 대한 간접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약칭)」 제2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약칭)」 제75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약칭)」 제74조

쟁점 사항

-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것은 불가피했던 상황이었고, 이는 ‘계약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간접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공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 반면, 시공업체에서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한 사안이므로 간접비 지급은 부적절 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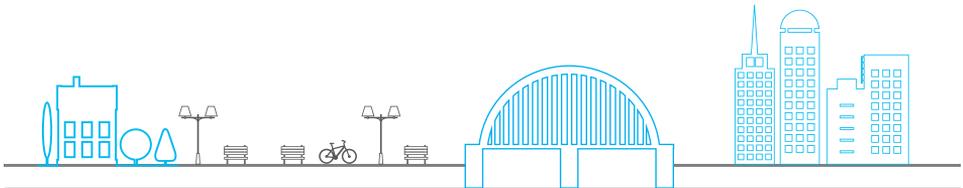
컨설팅 감사결과

- 「지방계약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이 경우 실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 정산서류·임금 지급 대장 등 간접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청 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였다.

-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공업체에 계약 금액 조정(간접비 지급)을 실시하여 책임 없는 사유로 기업이 불합리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군에서 진행 중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및 분류식 하수관로정비사업'과 발주 예정인 '분류식 하수관로(2단계)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지 컨설팅감사가 신청 되었다.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쟁점 사항

- 군에서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2개의 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인접하여 있고, 통합 시행 시 단독 발주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2개 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불명확 하였다.
- 따라서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지만 공사 시기가 1년이 차이가 나는 2개의 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및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와 ‘분류식 하수 관로(2단계)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경우 일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통합 규정은 발주시기가 유사한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입찰 및 계약)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이미 1년여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에 유사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분류식 하수관로(2단계)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자목)에 규정된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의계약 또한 타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군에서는 ‘분류식 하수관로(2단계) 정비사업’ 에 대해 적법한 별도의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방식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신청 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였다.
-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발주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시에서 추진 중인 ‘문화원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종중(宗中)에서 시로 기부채납하였는데, 해당 토지 중 일부(14,500㎡)는 한 농민이 임차를 받아 20년 이상 경작해 왔던 토지였다.

위 임차농민에게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등

쟁점 사항

- 기부채납 된 종중 토지 임차농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면, 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에 ‘기부채납은 기부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은 부적절 하다는 입장이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수용대상인 농지의 경작자 등에 대한 2년분의 영농손실보상은 그 농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생기는 이익 상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본 건은 보상계획 공고(2016. 7. 11.)가 기부채납 행위(2016. 11. 24.)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 보상요건을 충족하고, 행정행위의 흠(기부채납을 예상하여 보상계획 공고 당시 영농보상 대상 토지를 보상대상 물건에서 누락)이 치유된다면 영농보상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토대로 보상계획 재공고 후 임차농민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신도시 조성 이후, 인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주민들은 축산시설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한편, 축산 농가들은 인접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악취,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축산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축분뇨법」에 ‘폐업보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탓에, 소관 군에서도 축산농가를 설득하기가 곤란하였다.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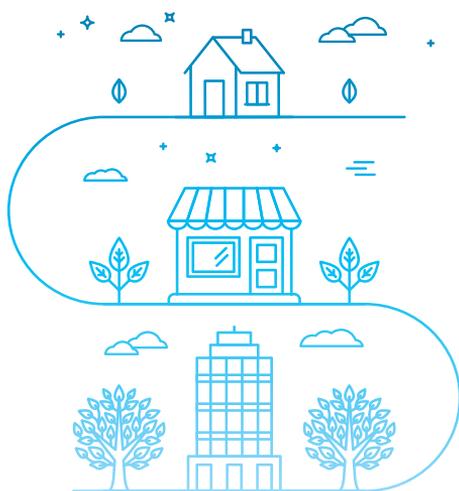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등

쟁점 사항

- 소관 군은 「가축분뇨법」에 ‘폐업보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휴업 영업손실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반면 축산 농가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며, 이전 및 휴업 손실보상을 거부하고, 보상액이 많은 영업폐지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도에서는 먼저, 환경부에 실질적인 영업폐지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축분뇨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도록 법령 보완을 건의하였다.
- 또한 법제처로부터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이전 보상 외의 재정적 지원, 즉 영업이익 등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회신 받았고, 이 내용으로 소관 군에 컨설팅하였다.
- 이 결과로 신도시 주변소재 축산농가들이 적정한 보상비를 받게 되어 집단 민원 발생을 예방하였고, 쾌적한 신도시 환경조성으로 인구유입이 확대 되는 계기가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군청은 국립공원 해안선 길에 지역토종식물인 위도상사화를 식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도상사화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이듬해 5. 31.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예산을 사고이월하였다.

하지만 국립공원, 군사작전, 공유수면 등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로 관련기관 협의가 길어져 당초 납품기한이 연기되면서, 상사화의 특성상 5월 이후에 잎이 떨어지게 되어 구매규격서에 명시한 물품의 규격 중 풀잎길이(초장)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사화 초장 확인이 곤란하여 이를 제외한 다른 조건인 포트의 지름(뿌리의 활착정도를 알 수 있음)을 측정하여 검수를 진행하여도 되는지를 묻는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8절

쟁점 사항

- 상사화 납품 시 구매규격서에 명시한 물품규격(풀잎길이, 포트의 지름)을 확인하는 검사를 이행한 후 납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납품 연기로 물품의 특성상 규격 자체를 측정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조건만으로 검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납품업체는 구매규격서 뿐만 아니라,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품질보증 할 의무가 있으므로



-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범위(포트의 지름 : 뿌리의 활착정도를 알 수 있음) 내에서 필요한 검사를 거쳐 납품을 받고, 위 규정에 따라 납품 후 1년 이내에 물품의 규격과 품질을 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납품업체에게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통보하였다.

- 이를 통해 발주청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을 측정하고 검수해야 하는 부담감과 다음해 앞이 나올 시기까지 기다릴 경우 발생하는 사고이월예산의 불용을 방지하였고



- 납품업체는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납품연기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관리비 부담을 덜고 해당규격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다.

※ 사업완료 후 군청은 식재된 물품을 재확인한 결과, 8개월 간의 생육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초장길이가 제시값을 상회한 것을 확인함

컨설팅 요청 내용

△△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가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신청기한은 출생신고를 한 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의 부모 중 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하였고 모(母)는 전 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으며, 신생아는 해당 연도 1월에 출생하였으나 전 남편과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느라 6개월 이상 지난 해당 연도 10월에서야 신청하여 신청기한이 경과한 상태였다.

* 친생부인의 소 : 법률상 부부 한쪽이 해당자녀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불가 통보 시 여러 특수한 상황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지급 가능여부를 묻는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 「△△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쟁점 사항

- 군청은 해당 신청인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가 해당 군에서 실제로 오랫동안 거주해 왔으며 친자확인 및 이혼소송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늦어져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을 초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신생아의 모는 거주불명 등록되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거주불명 등록기간에도 소송(친자확인소송)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군에 거주하고 있었고 신생아의 부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 또한 전 남편과 친자확인 및 협의이혼 소송으로 출생신고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당초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신청기관에 통보하였다.
 - ※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 규정 등을 검토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의견표명

컨설팅 요청 내용

군은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보조사업자의 고추종합처리센터를 신축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운영미숙으로 경영난에 놓이게 되면서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보조시설물의 공익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초 보조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군청에서 보조사업자 승계를 통한 공공유형시설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산확보 후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매입 및 승계를 취득하기 전 해당 물건에 대한 매입가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 컨설팅 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6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8호 가목
- 「농수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산물 마케팅 지원 편 5.이행점검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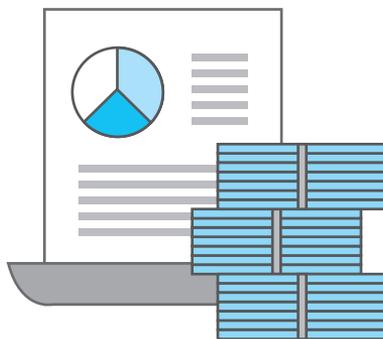
쟁점 사항

- 보조시설물 중 기계기구는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나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매입금액으로 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 반면, 기계기구는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만큼 감정평가액을 매입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보조사업자의 입장이 서로 대립되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한 주요 시설별 사후관리 기간은 건축물 10년, 기계기구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이 경과한 위 기계기구는 군에서 사후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따라서 군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건축물은 감정평가액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계기구는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 되었으므로 감정평가액대로 취득하도록 통보하였다.
- 또한 군은 보조사업자에 38.4%를 출자한 최대 출자자인 만큼 합리적 협의를 통해 기계기구 등의 매입금액을 최대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컨설팅 요청 내용

△△시에서는 2016년 4월경 민원인으로부터 공동혁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에 2층 건축물을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동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연면적의 40% 미만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50% 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도에 신청하였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제1항

📢 쟁점 사항

- 당해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이 지침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단독주택용지 내에서 층수는 3층 이하로 하며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15. 1. 7. 개정 시행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지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50%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 또한, 주민이 2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1층 면적의 80%만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여 무단 용도변경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은데, 당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대로

할 경우 1층의 80%만 근린생활시설 사용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대로 할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에 관한 것은 해당 시장이 종합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하고,



- 다수의 자문 변호사도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은 관계법령으로 보기 어려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정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 △△시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하는데 비용은 들지 않지만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 따라서 도에서는 개정된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변경기간(3개월) 중에 2층 규모의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주도록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소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정하게 되었고, 완화된 규제를 소급적용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2017년 10월경 민원인은 제철소 일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시에서 사업 예정지를 확인한 결과 진·출입 구간 중 일부가 지목상 제방(사실상 도로)이어서 이를 도로로 인정하여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도에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쟁점 사항

-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 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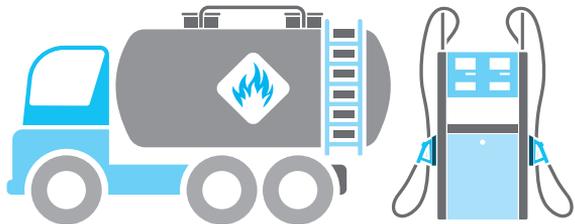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와 [별표 4]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위 사업 예정지에 접한 지목상 제방인 사실상의 도로(왕복 2차선)를 도로로 인정할 경우 위 허가가 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컨설팅 감사결과

- 컨설팅을 의뢰받은 도에서 확인한 결과, 간선도로에서 위 사업 예정지까지는 사업자 소유의 도로와 소관 시 소유의 도로 및 제방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시 소유 제방의 경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지 여건 상 도로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 등을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따라서 도에서는 시 소유의 제방을 도로로 인정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만일 소관 시에서 위 제방을 도로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6.8km (폭 8m)의 도로를 신규로 개설한 후 위 사업을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였으나, △△시는 도의 컨설팅 의견에 따름으로써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민원인은 2017년 10월경 지목상 대지로 되어있는 진출입 도로와 면한 곳에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 군에 문의 하였다.

군 담당자가 사업 예정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도로는 군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지만 아직까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이를 도로로 인정하여도 되는지 판단이 어려워 소관 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제1항, 제44조제1항

쟁점 사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군수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는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 위 주택 건축 예정지에 접한 토지(군에서 도로로 개설하였으나 현재까지 지목상 대지인 토지)를 건축신고 수리 시 도로로 인정할 경우 위 신고 수리가 가능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 신고 수리가 불가능했다.



컨설팅 감사결과

- 도에서 확인한 결과, 소관 군에서 개설한 도로는 지목은 대지이지만 실제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에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 따라서 도에서는, 위 토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소관 군에 제시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소관 군에서는 위 대지를 도로로 인정하여 주택 건축 신고를 수리하였고, 추후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도 지적부서에서는 2015년 3월경 소관 △△군을 거쳐 공장 준공에 따른 지적 확정측량과 지목설정 신청을 받았다.

- 부지면적 : 90,505㎡(1단계 67,425㎡)

- 건축규모 : 7,267.74㎡(9개동), 공장

그러나 지적확정 측량의 경계확정 방법과 지목설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업무 처리를 못하였고, 이에 따라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

쟁점 사항

- 위 공장은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공장 신설 승인 및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하나의 필지로 받았다.
- 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적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도 지적부서에서는 토지의 현황대로 (공장용지, 주차장용지, 도로, 공원 등) 지적확정 측량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사업주는 위와 같이 지목이 설정될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공장이 법령 위반으로 철거할 때까지 매년 약 4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할 처지가 되었다.

※ 지목을 세분화하여 설정할 경우 준공한 건축물이 공장용지로 한정되어, 건축법상 건폐율을 초과하는 위반 건축물이 됨

컨설팅 감사결과

- 사업주는 국토교통부에 지목 설정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현황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수의 도 자문 변호사도 위의 방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도 도시계획부서와 소관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시 하나의 필지로 처리되어서 부지 전체를 공장용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위와 같이 지목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도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공장의 경우 각종 인·허가시 하나의 필지로 인·허가 등을 받았으며,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녹지 등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아니라 개별 공장만이 이용하는 시설이었다.
- 따라서 도에서는 부지 전체를 공장용지로 지목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1단계 전체면적에 대해 공장용지로 지목이 설정되어, 현재 공장(사업비 306억 원)이 정상 가동 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컨설팅 요청 내용

2017년 3월경 민원인은 임야에 양식장 신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군의 답변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소관 군에서는 위 산지전용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부서 간에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도(道)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16]

쟁점 사항

- 소관 군 산지전용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해당 필지(임야, 공익용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양식장을 신축하려면 진입도로(사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2017년 9월경 민원인으로부터 위 진입도로 개설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고 수산 부서에 협의한 결과 도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이에 산지전용 부서에서는 2017년 10월경, 민원인에게 해당 임야는 공익용산지이므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려면 전체 길이 190m를 50m마다 4번(현황측량 → 산지전용허가 → 시공 → 분할측량 → 지목변경 순)에 걸쳐서 인·허가를 받은 후 개설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 이를 따를 경우,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기간만 6개월 이상을 소요하게 되어 민원인이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컨설팅 감사결과

- 도에서 확인한 결과 양식장 신축 예정지의 경우 도로에 접하고 있어 별도로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 없고,



- 만약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양식장 신축을 위한 도로 개설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어,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였다.

- 따라서, 도에서는 도로가 해당 필지에 접하고 있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없이 양식장 신축이 가능하고,



- 만약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소관 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시 기존 도로를 인정하기로 하여, 민원인은 6개월의 시간과 약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절약하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2017년 5월경 민원인은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고, 시의 확인 결과 해당 부지의 진·출입로가 지방도에 접속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시는 도의 도로부서와 협의하였고, 도로부터 “진·출입로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기준(변속차로 등)에 부합되게 개설하라”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시에서는 현지 여건상 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위 업무처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컨설팅감사를 도에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3-3-2-1

쟁점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 있고,



-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의 규정에 따르면 진입도로는 도·시·군 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대로 진·출입로를 지방도에 접속할 경우 현지 여건상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기준(변속차로 등)에 부합되기 어려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컨설팅 감사결과

- 도 감사부서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를 지방도에 접속할 경우 도로 안전을 위하여 도 도로부서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위 지방도에서 진출입하지 않더라도 다른 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에 따라 도에서는 민원인이 진출입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방도에서 진출입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에 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소관 시에서는 민원인이 진·출입로 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도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2015년 11월 식품특화단지 입주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중(공정 95%, 시운전 전, 사업비 1,685백만 원) △△군(郡)은 오·폐수 확보 부족(계획량 100m³/일, 발생량 3m³/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켰고,

- 사업자의 수차례 공사 중지 해지 요청에도 처리하지 않다가 2017년 1월경 사업자로부터 공사 중지에 따른 계약해지와 지연보상금 지급 청구를 받았다.
- 이에 따라 △△군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재개(시운전 등)가 가능하도록 해법 제시를 구하는 컨설팅감사를 도에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쟁점 사항

- 군에서는 설계도서에 시운전을 위한 오·폐수 유입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타 지역 농공단지를 확인하였으나, 저유량으로 시운전을 할 때에는 미생물 증식이 어렵다는 결론만을 얻었고,



- 소관 환경청에 질의하였으나 공법사*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이행 방법을 모색하라는 답변만을 받자
- 자체적으로 100m³/일 오·폐수가 발생하면 시운전하기로 결정하고, 시공자와 협의 없이 2015년 11월 공사를 중지하였다.

* 하수, 분뇨,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처리공정에 대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

- 하지만, 가동 업체(1개)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저장탱크 2/3를 채우고 저지대 맨홀로 역류 되었으며, 군에서 4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동 중인 업체에까지 역류될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위 오·폐수는 6개월 시운전 양에는 턱없이 부족(약 10일분)하였다.
- 이에 공법사와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운전을 위한 오·폐수 유입량을 100m³/일에서 60m³/일로 하향 조정하자고 건의하였으나



- △△군에서는 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패 사례와 준공 이후 대책 부재를 이유로, 지연배상을 하더라도 오·폐수 유입량이 100m³/일 되는 3년 후에 시운전을 하고, 현재 발생한 저장탱크의 오·폐수는 타 시설에 운반하여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도 감사관실에서 동일 공법 사용 후 정상 가동 중인 타 군의 농공단지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시운전 부족량은 유사한 오·폐수(60m³/일)를 인근에서 운반·충당하여 시운전을 할 방안을 찾아냈고, 시운전 이후 폐수종말처리 시설 내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시운전 계획량은 60m³/일로도 가능하고, 부족한 오·

폐수는 인근에서 운반 할 것과, 준공 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시공자는 1억 원의 배상금 요구를 철회하였고, 2억 5천만 원의 배상 분쟁을 없앴으며, 타 시설에서 오폐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운반비 8천만을 절감하는 등 총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 또한, 위 농공단지에는 2018년 3월말 기준 4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2020년 2월말까지는 12개 업체가 가동 예정으로, 위 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395명의 고용 창출과 104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해당 지역은 3,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동양 최대 길이(12km)의 백사장과 매년 4월엔 튼튼 축제로 관광객이 많으나, 섬 지역으로 상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가뭄 시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어 주민 생계를 위하여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당초 계획인 2020년 말보다 상수도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현재 타 국가기관에서 공사 중인 교량 하부에 상수도관 거치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회계부서에 위 교량 도급자와 상수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계부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

- 이에 따라 소관 군은 계약방법의 타당성을 묻는 컨설팅감사를 도에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쟁점 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본 사안이 제4호 가목과 나목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불분명’과 ‘작업상의 혼잡’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량 공사자를 대상으로 상수도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이와는 반대로, 두 개의 사업은 동일한 공정의 사업으로 보기 곤란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교량 공사 도급자와 계약하는 것은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의계약은 불가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도 감사실의 현지 확인 및 전문 기술자의 자문 결과, 위 교량공사와 상수도 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도장이 완료된 교량 거더*에 상수도 거치대 설치를 위한 볼트 작업이나 용접을 하게 되면 도장 파손이 우려되고, 해상에서 거더 설치와 상수도 거치대 연결 작업 시 바지선에서의 작업 혼잡과 하자 발생이 예상되었다.

* 거더(girder) : 건설 구조물을 떠 받치는 보를 뜻하는 말. 힘이나 비틀림, 수평하중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데, 다리, 비행기 등을 만드는 데 많이 쓰인다.

- 따라서 도에서는 위 상수도공사를 교량공사 도급자와 수의 계약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가능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섬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2년이나 단축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컨설팅을 통해 교량공사와 상수도공사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로 하자 발생 등을 예방하여 약 12억 원의 사업비와, 2년 간 저수지 관리 인건비 3억원 등 총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 34개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에서 7억 원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 15만 명의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3,600여 명 주민이 격일 급수로부터 2년을 빨리 벗어 날 수 있게 하였다.



🔍 컨설팅 요청 내용

△△군에서는 산악지형에 당초 24기의 발전기 및 진입도로와 전기배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승인하였으나,

- 사업자는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2기의 발전기 설치를 포기하고 진입도로와 전기 시설의 배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에 비해 산지전용 면적은 5.6% 줄이는 것으로 군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군은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 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이나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면적이 5%이상 변경되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심의 등이 면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컨설팅을 요청하였다.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 쟁점 사항

- 동 건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면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되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그러나 위의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지침이 없는 실정이고, 금회 변경면적이 당초 대비 5.6%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증감면적 절대값의 합이 42.7%(증가면적 35,898㎡, 감소면적 46,679㎡)로 변동 폭 규모는 다소 큰 상황이다.

- 한편, 국토부에서는 동 사안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해당여부는 도·시·군 계획 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내용(변경 전·후)과 측량결과, 현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권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컨설팅 감사결과

- 소관 도(道)에서는 감사관 2명, 도시계획과 2명 및 군관계자 2명이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하고 업무 관계자 ‘끝장토론’을 개최하여 조건부로 ‘경미한 변경’ 인용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 군 계획시설인 풍력발전 시설은 사업특성상 산지에 설치되는 것으로 산악 지형의 특성상 측량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여건과, 당초 발전기 부지의 위치변경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상 “지형 사정으로 인한 군 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 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만, 군 계획시설 부지 중 가감되는 변경부분이 상당하므로 당초 허가된 면적과 노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경면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한 후, 소관 군에서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통보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컨설팅 하였다.

- 이로써, 좌초 위기의 공사를 살려내어 9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713 억원에 달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다.

컨설팅 요청 내용

해당 군에서는 마을회관 건축에 필요한 옹벽 설치공사를 기존 석축이 설치되어 있던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의 토지에(지목상 도로)에 연접시켜 시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도로 내에 구조물(옹벽)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도로 내 일부 구간에 도로기능 유지를 병행하여 옹벽 설치가 가능한지를 묻는 컨설팅 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국유재산법 제30조

쟁점 사항

- 마을회관 건축을 위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유도로 부지를 점용하여, 도로의 석축과 연접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명확한 근거 규정으로 판단하여 민원을 방지하여야 했다.

컨설팅 감사결과

- 「국유재산법」 제30조에는 공공용(도로) 재산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생산기반시설⁴⁾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다.



- 또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권한은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상 옹벽설치에 대하여 도로시설로 볼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가능 할 것이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시설물과 지면의 불일치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구조물(옹벽)의 위치와 관련하여 현장측량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 사용 허가 시에도 필요하다면 장래 목적과 용도에 장애여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철회한다는 유보부 사용허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통보하였다.

- 이로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로 원만한 민원 대처방안 제시하여 민원을 해소하였다.

4) 농업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유지,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의 농도 등 농로 포함)등의 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

컨설팅 요청 내용

민원인은 산000-2번지가 실제 농지로 활용되어 1995. 5월 당해 부지에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1995. 11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전산대장에는 산000-2번지가 아닌 산000-3번지가 농지전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 현황과 불일치했다.

△△군에서는 건축 준공 후 20년 이상이나 경과한 상태로 전산입력 시 기초자료였던 수기 대장을 찾을 수 없어 정정이 어렵다며, 도(道)에 민원해결을 위해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4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쟁점 사항

- 전산화가 되지 않은 1996년 이전 수기로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신고를 접수 처리하여 전산화 작업 이후엔 수기 대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당시 건축물대장 관리는 ‘신고사항’으로 읍·면에서 처리되었으며 이후 전산 처리와 함께 군 본청으로 이관되어 관리됨으로써



- 건축신고와 함께 건축부지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공부 정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락, 오기, 전산 착오 입력 등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 반면, 농지전용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청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나, 증빙서류 및 직권정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건축신고를 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舊 수기 신청도, ‘구적표’) 상에서도 지번이 ‘산000-2’으로 확인되나,



- 건축 전 선행행위로 이루어진 농지전용 신고서상에서 민원인이 지번 ‘산000-2’을 ‘산000-3(도로)’로 잘못 신청한 것인지, 행정청에서 전산화 과정에서 착오로 입력된 상황인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다만, 면장이 발급해준 ‘농지전용신고증’(1995. 5. 25. 발급) 상 ‘전(田)’으로 표기되어 있고, 농지전용신고대장(전산화된 대장)에 ‘산(山)’으로 표기되는 등 착오사항이 발견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전산화 초기 과정에서 행정청의 착오로 추정할 수 있었다.
- 따라서, 소관 행정청이 ‘하나의 일련에 이루어지는 신고행위 건’에 대하여 주된 인·허가인 건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농지전용신고서, 건축물 등의 지번을 일치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결과를 군에 통보였다.
- 20년전 건축을 위한 각종 신고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민원인이 일부를 착오 신청하였다더라도 행정청에서 사전에 바로잡아야 했음에도 20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한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행정 착오에 의한 건물주의 오랜 고충을 덜어줄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신청인은 양돈 농장을 운영하던 중 2012. 1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시행 2013. 1. 1.) 정책에 따라, 폐업을 하면 보상을 해 준다는 군 관계자의 구두 약속을 믿고 돼지를 처분하였다.

그러나 △△군은 축사의 이전 명령 등 사전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 농장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구두로 한 약속에 따라 행정권의 법적 선행절차 없이 자체 폐업한 자에 대해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였다.

관련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쟁점 사항

- 축사의 이전 명령 등 사전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민원 농장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민원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 제시 또는 법리 해석을 요청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라고 의결하여 통보하였고,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이 민원 농장의 폐업이 「△△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관 군의 명시적인 이전명령 등에 따라 행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군의 약속이 공적 견해표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청인이 이를 믿고 이 민원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실제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실질은 이와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조례 제5조를 (유추)적용하여 폐업보상금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덧붙여, 이 민원 사안에서 소관 군이 권익위의 의결을 존중하여 이 민원 농장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인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상 물건 및 보상금액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장주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적정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신청 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로써 행정권의 구두약속을 믿고 공익을 위해 협조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확보한 사업부지(공유지)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인 까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부서는 해당 공원의 조성 면적 및 사업내용 검토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추진방식을 생활권공원(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한지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였다.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2조, 제34조, 제37조
- 「농지법 시행령」 제30조, 제44조

쟁점 사항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행정계획) 시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농지전용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은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바목의 '공원'은 상기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였다.



컨설팅 감사결과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지 전용허가·협약이 허용되는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의 '운동시설'은 농지전용 협의만으로 목적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군청의 농지전용 협의부서는 설치계획 중인 '운동시설'의 위치가 아파트 주변으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그러나 감사부서에서는 설치계획 중인 '운동시설' 인근에 총 145가구 409명의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어느 관련 규정 및 지침에도 시설물 이용 농업인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가구 및 인구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였다.
- 이를 통해 공공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휴식공간인 체육시설 조기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민원인은 한 생태공원 주차장에서 2년째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던 중, 전국적으로 발생한 A.I.로 인해 영업장 소재지에 출입금지 통보를 받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에 현행법 상 운영을 못한 일수만큼 사용료를 돌려 주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으나, 푸드트럭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당장 영업을 가능한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해당 군에서는 대체 부지를 찾아 수익계약의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푸드트럭 이동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익계약 운영 요령」(2016. 7. 12.)에 따르면 수익계약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가능 방안에 대한 컨설팅감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푸드트럭 이동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익계약 운영 요령」(행정자치부, 2016. 7. 12)

쟁점 사항

- 민생경제 현장의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행 중인 푸드트럭 영업 소재지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AI 발생으로 영업장소 폐쇄)으로 원치 않은 영업중단 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주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그러나 영업중단의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대체부지(공유지)를 해당 영업자에게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하여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푸드트럭 이동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2016. 7. 12)에 따라 계약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위 피해자들이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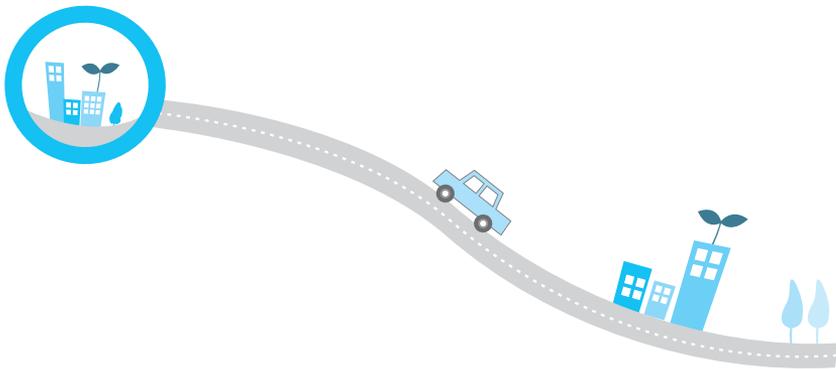
- 위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 개인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푸드트럭 이동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특정개인과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금액을 정하고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기존의 푸드트럭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하기 힘든 규정으로 판단하였다.
- 하지만, 상기 운영요령 ‘6.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3) 적용 특례’에서는 “본 요령 시행 이전에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푸드트럭 영업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종전 계약을 해지 후 ‘이동영업’ 사업자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감사부서에서는

- 영업 중인 사업자 중 개인 소유부지에서 영업 중인 자를 제외하고 '고정 영업'에서 '이동영업'으로 허가를 변경한 다음,
- 추가로 별도의 부지를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지정하고, 추가 영업장에는 사업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영업장 폐쇄·방문객 감소 등의 기간에 상기 장소로 이동 영업하게 한다면,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도 목적인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를 통해 재난(AI 등)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제공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 저장발효조) 건축주는 축사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 행위허가를 통해 공작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해당 시설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자 △△시에 신청하였다.

하지만, 시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의 제조업(분류번호 : 20209)의 경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공장’으로 분류하여, 공장 등록을 완료한 시설물에 한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축산분뇨 처리업(산업분류번호 : 37022)의 경우 허가 요건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에 따른 「비료 생산업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비료관리법」 제20조

쟁점 사항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의한 비료 생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9)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제조업에 해당할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설립 인가 및 등록을 완료한 이후 비료생산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컨설팅 감사결과

-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해당 시설의 공장 등록 여부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관련 시설의 면적, 부가가치의 창출 규모 등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공장 설립 인가 또는 제조시설의 설치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편, 시에서 현재 마련 중인 「축산분뇨처리업의 비료생산업 등록기준에 따른 허가 요건」(건축물, 토지, 시설물, 인·허가 등) 등 기준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규제를 위한 법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한 이후 그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였다.
- 또한, 건축물, 토지, 시설물 설치에 대한 관련부서의 등록기준은 해당 시설물(건축물 등) 설치를 위한 개별 법령상의 인·허가 신청 시 담당부서의 행정 절차 상 협의 등을 통하여 검토될 사항이며,



- 비료생산업 등록을 필한 신청인이 여타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용도지역 또는 건물에 관련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할 시에는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등록 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 이로써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신설을 미연에 예방하고, 비료 생산업 등록(축산분뇨 처리업)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관련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



컨설팅 요청 내용

도(道) 소재 일반(종합)건설업체는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이 각각 152개 업체이며, 조경공사업은 25개 업체이다.

해당 어항 조성공사는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의 비율이 비슷하고,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한다.

따라서 사업을 통합 발주할 경우, 조경공사업과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면허보완) 방식을 하지 못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토목공사업체에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묻는 컨설팅검사가 신청되었다.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쟁점 사항

- 통합발주를 할 경우 도 내의 많은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분리발주를 하자면 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컨설팅 감사결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사의 성격 및 규모,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분리발주를 인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통합발주를 하여야 한다.

- 한편, 분리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제비용의 중복반영으로 공사비가 88백만원 정도 증가하며, 토목공사 발주 후 1년 후에 또다시 조경공사를 발주해야 하는 문제로 공사원가 인상분 반영이 불가피하여 수억 원의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었다.



- 또한 제거토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 연계성 상실로 예산 낭비 및 품질 확보도 곤란해 질 우려가 있는 등 위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분리발주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다.

-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 사업은 통합발주가 바람직하다고 컨설팅하였다.
-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제거토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시공 연계성 확보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03

적극행정 면책
개요 및 현황



개요

추진배경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면책함으로써 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추진근거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 7. 26.)

※ 감사원 및 자체감사 관련 적극행정면책제도

- 감사원법(법률 제13204호, 2015. 2. 3.)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41호, 2015. 18.)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제297호, 2017. 2. 20.)

면책 대상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

면책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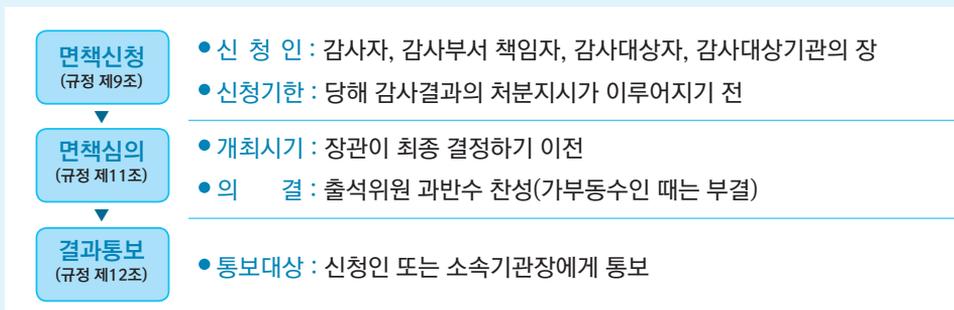
- **(면책 요건)** 공익성, 적극성, 고의나 중대과실 없을 것 등(규정 제5조)
 - 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②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③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④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제외대상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규정 제6조)
- **(범위 및 요건)** 정부합동감사 결과 불이익한 처분 등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제외

처리 절차

- **(일반면책)**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까지 감사자,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 신청에 의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현장면책)** 실지감사 기간중에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 신청에 의하여 현장 감사단의 내부 심의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현황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현황 ('17.12. 31.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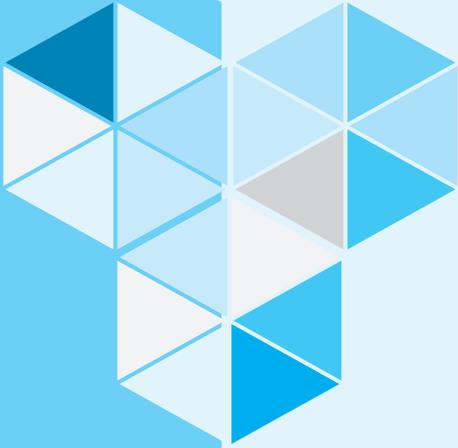
시·도	대상(건)	인용(건)	불인용(건)
합계	174	107	67
행정안전부	3	3	-
서울특별시	30	11	19
부산광역시	4	4	-
대구광역시	27	9	18
인천광역시	-	-	-
광주광역시	13	6	7
대전광역시	3	2	1
울산광역시	3	3	-
세종특별자치시	1	1	-
경기도	9	5	4
강원도	9	6	3
충청북도	36	30	6
충청남도	5	1	4
전라북도	5	4	1
전라남도	3	3	-
경상북도	1	1	-
경상남도	16	13	3
제주특별자치도	6	5	1

※ 실적 없는 자치단체 : 1개(인천)

연도별 운영 현황(년도별)

년도별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 상	174	35	12	9	22	12	24	12	35	13
인 용	107	19	8	4	11	-	24	11	19	11
불인용	67	16	4	5	11	12	-	1	16	2





04

적극행정 면책
우수사례



위법부당

소액환급금 기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186건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사회공동모금회에 제공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요청사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환급대상자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 186건(710천원)을 기부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과 불우이웃 돕기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공익목적을 위한 사안
- 매년 상·하반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소액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

검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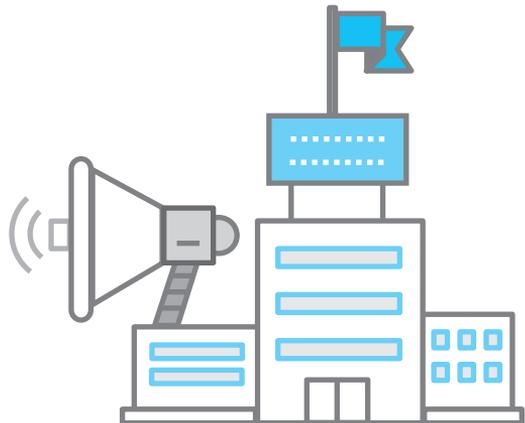
- (공공의 이익) 소액 환급금으로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선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

- (적극성)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비를 위해서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
- (업무처리 결과) 환급대상자 명의로 지방세 환급금 186건(710천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따뜻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 (고의 및 중과실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환급통지 및 기부 동의를 받는 것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업무이고, 단순 과실로 별도 개인정보 제동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자 연말정산에만 해당 정보를 이용하고 즉시 폐기한 점을 고려



심의결과

지방세 미환급금 정비 및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경징계 및 훈계를 면책함



위법부당

3차례에 걸쳐 5년간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주면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 생략하고 사업추진

민간위탁 정산절차를 누락하거나 자본형성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민간 위탁금으로 승인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 소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요청사유

- 통상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은 수탁자 운영능력, 시설물 안정성 등이 매우 중요하여 검증받은 사업자와 계속적으로 운영계약을 하는 점과 의회승인 및 내부결재 등은 거쳤다는 점을 감안
- 민간위탁 사업관리에 일부 소홀한 점은 있었지만 당시 소각장 1기 가동 중단으로 연 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하여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설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하였고 그 결과, 2017. 5. 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그 밖에 소각장 폐쇄에 따른 주민 부담 해소,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따른 재정적 효과 등의 성과를 거둠

검토내용

- (공공의 이익) 소각장 폐쇄에 따른 주민부담 해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 (적극성) 안정적 열원확보를 위해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설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연간 80여억원의 재정효과 거양
- (업무처리 결과) 2013. 4. 소각장 1기 가동 중단으로 연 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열원 확보가 가능
- (고의 및 중과실 여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하였지만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였고, 민간위탁 업체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으며, 사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이행 한 점 감안

심의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연간 80여억원의 재정효과를 거양하였고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경징계를 면책(훈계)함



위법부당

상습침수지역 해소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등이 확정되었으나 총액 발주를 하지 않고 4차에 걸쳐 분리발주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요청사유

- 당시 내습한 집중호우로 피해지역 침수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다만 과도한 업무환경에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침수지역 지정 및 사업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음

검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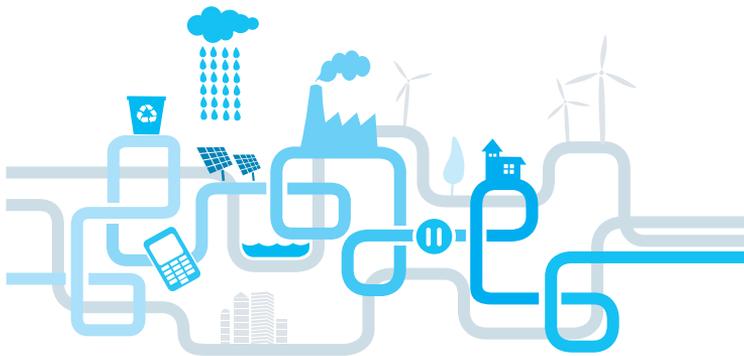
- (공공의 이익) 상습수해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마련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

- (적극성) 기록적인 폭우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상습침수지역 해소에 기여
- (업무처리 결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침수지역 지정 및 사업비 확보 등 성실한 업무를 처리하여 현재는 사업이 정상 완료
- (고의 및 중과실 여부) 상습 수해피해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국민안전처(소방방재청)와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을 협의하여 추진 한 점 감안



심의결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업무가 폭주하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직원 5명 전원 면책(불문)함



위법부당

보건소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통합 발주가 가능한 건축공사(46백만원), 도장공사(17백만원) 및 방사선실 내부공사(8백만원)를 3건으로 분리한 후 수의계약으로 체결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요청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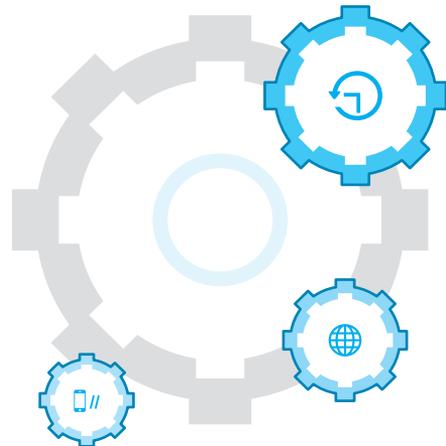
- 보건소 개소일을 지역민들에게 이미 홍보하였고, 임시 보건소로 사용하기로 한 장소의 대부계약(한국자산관리공사)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일정이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정해진 보건소 개소일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을 추진
- 개소가 늦어질 경우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가게 되어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검토내용

- (공공의 이익) 의료시설 낙후지역에 보건소를 건립하여 보건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
- (적극성) 보건소 개소가 늦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공사 진행을 위한 적극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
- (업무처리 결과) 보건소 개소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의료시설 낙후 지역에 보건소를 건립하였고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점 고려
- (고의 및 중과실 여부) 대부계약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역주민에게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고의 및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심의결과

주민들에게 보건소 임시청사 개소일이 홍보되어 있었고, 개소일에 시기 적절하게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감안하여 경징계를 훈계로 감경함



위법부당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관련 부대시설인 하수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존관과 연결 지점이 단축됨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L=16m가 미시공 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처리

관련법령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 제138조, 제163조

요청사유

- 협소한 도로 공간에서 비굴착으로 진행되는 지하 6m의 공사현황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시민 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하수관의 기능 충족 및 민원 해소 등의 성과가 있음

검토내용

- (공공의 이익) 사유지에 설치된 공공하수도를 공유지(구거부지)로 이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공공성 인정
- (적극성)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다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3회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 해소

- (업무처리 결과) 준공 당시 현장을 확인하고 하수관 내 우수 흐름을 살펴 공공하수관의 기능을 충족하고 있음
- (고의 및 중과실 여부) 지하 6m 깊이로 설치된 비굴착 방식의 하수관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도 없음



심의결과

시민 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하수관의 기능 충족하였고 민원 해소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훈계처분을 면책함



위법부당

‘의료기관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증가되는 건설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않고, 업체가 제시한 물량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해 용역비 5,860천원을 증액하여 집행

또한,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공사감독자가 직접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각각 입력하여야 함에도 2012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배출인계서 61건을 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업체가 대리 입력

관련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48조

요청사유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 의료기관의 조속한 개원이 해당 시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공이익에 부합
- 촉박한 기간 동안 설계 및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개원 예정 시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검토내용

- (공공의 이익) 의료기관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낙후된 지역에 의료서비스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합
- (적극성) 개원시기를 정해놓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립의원 조기 개원에 기여하였고 현재까지 해당 공사의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음
- (업무처리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설계서와 상이한 현장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당초 일정대로 준공
- (고의 및 중과실 여부) 금품수수 및 특혜성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는 등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발견되지 않음



심의결과

일부 업무과실은 있었지만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면책기준에 적합하여 관련자 2명에 대한 훈계·주의처분을 면책함

위법부당

운수업체가 제출한 2015년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납부비용과 광고비 미기재, 퇴직 연금 불입금, 차량구입보조금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결과보고서에 운송원가 45,347천원이 과다산정 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준공처리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 ~ 제16조

요청사유

- 당해연도에 정산검사에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다음해에 재정지원금 대상 정산을 전면 실시하여 과다 지급액을 확인하고 환수조치
- 보조금 환수로 인한 운행중지 등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버스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버스운송원가분석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

검토내용

- (공공의 이익) 대중교통 낙후지역에 농어촌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과 관련된 업무추진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

- (적극성) 재정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 과다 지급액을 사후 확인하였고, 버스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
- (업무처리 결과) 2016년도 용역을 통해 2015년 과다 지급된 재정지원금 251,790천원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
- (고의 및 중과실 여부)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이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버스 운송원가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사후조치 하는 등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점 고려



심의결과

재정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 과다 지급액을 사후 확인하여 2015년 과다 지급 된 재정지원금 251,790천원을 환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 1명에 대한 훈계처분을 면책함







05

관련
법령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4. 29] [국무총리훈령 제664호, 2016.4.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 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을 말한다.
3.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 컨설팅감사”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이하 “적극행정 지원사무”라 한다)
 - 나.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이하 “법령등 해석사무”라 한다)
 - 다.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제개혁 또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비위와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접수 및 소관)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접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즉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신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전 컨설팅감사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처리할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소속 감사기구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소관 법령등의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법령등 해석사무와 결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 해석만을 요청한 경우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 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법령 등 해석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에 대한 해당 법령해석기관의 회신문을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법령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위원회 및 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면제)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00664호, 2016.4.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훈령 제1호, 2017.7.26, 타법 재정]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장관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과장급)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관실 업무소관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적극행정, 국민행복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www.mois.go.kr